

나라	시작	종류	쿼터	출신국가	산업, 직업	노동기간
일본	1980년대	연수생		중국,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자료 없음	3-6개월, 1년 비자 이후 간신, 최장 2년간 연장 가능
일본	1960년대	연예인	쿼터 없음	필리핀, 한국, 중국, 태국, 기타	가무공연, 클럽 호스테스	계약서상 최저임금 규정, 200,000엔. 최대 6개월에서 1년간 비자 연장 가능
한국	1991	산업기술 연수생 현지법인 연수생		중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기타	섬유산업, 완구, 고무화학, 전자, 기계, 금속 등 기타	부분적으로 기간과 조건 규정되어 있음. 미화 210-260 달러 최저임금 (숙소제공 포함)규정. 법무부 훈령 255호와 294호, 노동부 예규 258호 등 관련 규정.
대만	1989-90	산업분야의 노동력 수입	96. 6. 현재 142개산업에 42,000명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제조업(섬유, 고무, 플라스틱, 금속, 전자), 건설업	근로기준법에 근거 기간과 조건 규정. 최저임금대만화폐 15,360 계약서상 고용주가 숙소 제공하도록 규정되어있음. 단수입국에 최대 2년 계약
대만	1989-90	사회, 개인 서비스분야의 노동력 수입	쿼터 없음	필리핀, 기타	가사노동, 간호인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최저 임금제 적용 -대만화폐 15,360 단수입국에 최대 2년 계약
홍콩	1975	가사노동자	쿼터 없음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기타	가사노동	노동법령에 따라 기간과 조건 규정 최저임금제 적용, 홍콩달러 3,860 무제한 계약갱신
홍콩	1989-95 1996	- 일반노동력 수입정책 - 보충노동력 수입계획	2,700명에서 시작 매년 증가하여 25,000명까지 늘어남	중국	호텔, 소매업, 무역업	노동법령에 따라 기간과 조건규정. 노동부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 최대 2년 계약기간, 고용주가 숙소 제공

홍콩	1991	신공항건설 특별 계획	2,000명에서 17,000명까지	중국, 기타	사회기간건설 산업	위와 동일
말레이시아	1985 1992	외국인노동자	쿼터 없음	인도네시아 · 방글라데시 · 태국, 파akistan	농업, 건설, 서비스, 제조업	고용법에 따라 기간과 조건 규정 최대 5년 계약 기간
말레이시아	1983	가사노동자	쿼터 없음	인도네시아 · 필리핀	가사노동	무제한 계약갱신

(자료: Asian Migrant Forum no. 11, November 1996)

### 3) 한국 - 다시 노동력 수출국으로?

세계경제 순위 11번째로 알려졌던 한국경제는 지난 해 12월 치욕적인 IMF 구제금융 신청으로 국가 신인도가 추락하였으며, 경쟁력은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보다 떨어지게 되었다. 이후 국제자본의 요구에 따른 경제 구조조정으로 미증유의 대량 실업을 놓고 있다. 국내 실업문제 해결책으로 정부는 가) 외국인근로자 국내인으로 대체와 불법 체류 외국인근로자 추방, 나) 국내인 해외취업을 장려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자면 정부는 그동안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취업하던 미등록 노동자들의 사면기간을 몇차례 설정, 이들의 출국을 돋고(? - 사실상의 추방) 있으나 이는 경제위기로 인한 내국인 고용창출의 목적을 띠고 있다. 올해 초 새정부 출범 이후 가진 노동부 장관의 청와대 보고에서 장관은 “외국인 인력 27만 명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자진 출국하는 불법취업자에 대해선 벌금부과를 면제하고 외국인근로자를 내국인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 국민회의 자민련은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또는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으로 대체 고용할 경우 자금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이로 인해 지난 97년 12월 27일 사면시간부터 8월 말까지 한국을 빠져나간 이주노동자 수는 61,689명이다. 98년 들어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취업을 포기, 본국행을택한 연수생도 1,122명이다.

다음으로 국내인의 해외취업 장려 정책으로 정부는 해외 건설현장에 내국인이 취업

할 경우 숙박비를 간접 지원하거나 어학교육비를 보조하는 등 해외취업 촉진을 통해 내년까지 2만 명을 해외에 취업시킬 방침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9월 28일부터 노동부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해외취업센터'(60, 70년대 해외취업의 창구였던 '해외개발공사'와 같은 기능)가 업무를 개시했다. 이는 지난 6월 11년 만에 '국외민간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신규허가가 재개된 것을 계기로 민간차원에서도 여러 업체들이 앞다투어 해외취업 알선에 나서고 있다. 이제는 학계나 취업전문가들도 '취업의 국제화'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ㄱ) 전경련측은 국내기업 해외사업장의 외국인 인력 대체와 해외건설, 정보통신, 해외선원 등 분야에 해외취업 활성화 방안 적극 모색중이다.

ㄴ) 정부측은 노동부, 외교통상부가 외교통상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을 '해외취업 정보창구'로 활동하도록 결정하고, 8월 말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와 지역본부 등 5곳에 해외취업센터를 열어 본격적으로 해외취업 지원에 나섰다. 노동부는 해외취업이 취업난 해소와 외화획득 뿐 아니라 해외취업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파악하고, 앞으로 정보통신 분야는 물론 해외건설, 디자이너, 봉제, 간호사, 해외선원 등 분야의 해외취업 전망이 밝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보통신 분야는 미국 등 선진국에 1만 명 가량이 취업 가능할 것으로, 건설인력의 경우 앞으로 5,000여 명이 해외취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표 2 참조)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 정보통신 분야에 취업할 우리 노동자들이 직면해야 할 현실이 그렇게 밝기 만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미국의 기능적 외국인들에게 발급되는 'H1-B비자' 법안 개정안이 지난 인권제한적 요소가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미국 정보통신업체는 자신들이 인력부족으로 산업성장이 지연되고 해외진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03년까지 매년 11만 5,000명의 기능적 외국인들에게 H1-B비자를 발급해야 한다고 이민 법안의 개정을 의회에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 법안 반대자들은 업계가 인력부족 현상을 과장하고 있다면서 많은 업체들이 이미 미국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있으며, 미 노동자들을 저임금의 외국인 노동자들로 대체하려 한다면서 이를 반대해왔다. 결국 10월 미 의회에서 개정된 'H1-B 비자' 법안은 미국 정보통신업체의 요구와 이에 반발한 미국 내 노동자들 사이의 절충안으로, 1999년과 2000년에만 각각 11만 5,000명씩을 고용하고, 2001년부터는 다시 6만 5,000명만을 고용하기로 돼있다.

개정된 법의 인권제한적 요소로 지목되는 것은, 규정상 H1-B 비자를 갖고 취업한 사람들의 보수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를 원하면

새 비자를 발급해줘야 하나 이것도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일단 고용주의 눈에서 벗어나면 더 이상 미국에 머물 수 없는 것과 TCS사의 경우 H1-B비자를 가진 노동자가 도중에 회사를 떠날 경우 3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조항까지 두고 있는 것은 이제 실업, 경제위기를 탈출하고자 선진국으로 진출할 한국의 '값싼 노동력'들이 감수해야 할 차별적 조건이 아닐 수 없다.

이와 더불어 단순기술인력도 해외취업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해외 불법체류자와 함께 상대적으로 취약한 이들의 인권보호는 노동력 수출, 수입정책에 우선하여 고려되어야 할 과제이다.

표 2 분야별 해외취업 추진현황

분야	관련기관	취업가능인원	추진현황	비고
정보통신	정보통신부, 한국 SW지원센터	10,000 명	영어 등 기초적 교육훈련 준비중	2000년 문제 해결 등
건설인력	해외건설협회	5,000명	모집공고로 2,800명 구직 접수	정부보조 필요
봉제	충청북도	1,000명	사이판 보세협회와 취업 약정	금년도 500명 취업예 정
기술연수 (일본)	대한상공회의소	2,000명	일본 JITCO와 협의 예정	1년 연수 뒤 2년 취업
디자이너	디자인 진흥원	미정	수요조사중	100-200명 예상
간호사	대한간호사협회	미정	해외한인간호사협회 등 수요조사중	소규모 예상
해외선원	해양수산부 선박관리업협회	3,000-4,000 명	해외취업촉진을 위한 규 제완화중	6월 현재 7,000명 취업

(자료: 한겨레신문 1998. 9. 3)

## 2. 이주노동자의 권리는 곧 인권

### 1) 왜 이주민 조약인가?

#### 1-1) 이주민 조약의 탄생 배경

노동력의 수출은 외화획득, 실업해소라는 측면에서 이미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채택한 정책이 되어왔지만 그동안 한 번도 이 노동력들이 사람이라는, 인권의 차원에서는

고려되지 못했다. 그러므로 이주노동자란 단지 사고파는 상품이요, 권리를 지닌 노동자나아가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따라서 그동안 이주민의 기본 인권은 너무도 쉽사리 침해당하거나 무시되어 왔다. 이는 시민, 난민, 등록된 외국인노동자, 학생 등과 같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범주에 들지 않는 이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이다. 더욱이 세계적 경제 악화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사람들의 이동은 기존의 이주민과 강제 이주된 사람들에 대한 포용과 지원을 적대감과 거부로 바꾸어놓고 있다. 어느 곳에서나 외국인에 대한 차별, 외국인혐오증, 인권침해 등의 단어가 일상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주민 인권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의 국제적 기준을 옹호할 필요를 인식하며, 이주민과 가족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 규약이 제정, 1990년 12월 18일 유엔총회에서 통과되었다.

## 1-2) 이주민 조약의 의의와 중요성

이 조약은 전문과 9개 부문으로 나뉜 93개 조항으로 이루어져있고, 현존하는 국제 인권규약, 구체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 인종적 평등성; 여성의 권리; 어린이의 권리에 주목하여 만들어졌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이주노동자 관련 조약을 참고하여 만들어졌다.

조약의 중요성을 요약하자면;

가) 본 조약은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나 경제적 실체 이상으로 보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가족과 함께 사회적 실체이며 따라서 가족재회를 포함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나)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 구성원들은 그들이 일하는 타국에서 비국적인으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권리는 흔히 노동력 수입국이나 자신의 나라 국내법상 제기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유엔과 같은 국제적 기구를 통한 보호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이 조약은 최초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개념과 이주노동자 범주 그리고 가족 구성원에 대한 국제적 개념을 밝혔다. 규약은 또한 이주노동자와 가족 구성원의 특정 인권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세웠다. 이러한 기준은 다른 취약한 위치에 있는 이주민과 이주노동자들의 기본적 인권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라) 기본 인권 개념을 등록노동자는 물론 미등록 노동자에게까지 확장시켰다. 등록 노동자와 가족구성원의 기본인권으로 인식되는 부가적인 권리, 특히 고용국에서 그곳 시민들과 같이 법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영역에서 동등대우를 주장하고 있다.

마) 이 국제 조약은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 구성원의 불법 및 은밀한 이동과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상황을 포함한 취약 방지와 근절을 위한 역할을 하고자 한다.

바) 규약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구성원 보호를 위해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는 국내법상 이러한 기준이 없는 국가들을 위한 수단이 될 것이며 이는 국제적으로 인식되는 기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 2) 이주노동자와 가족의 인권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대부분의 노동력 수입국에서 인정되는 일반적인 인권 원칙을 누려야 하고 이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가) 어느 나라로든지 떠날 수 있는 자유와 본국에 돌아가 거주할 수 있는 권리
- 나) 삶에의 권리
- 다) 고문이나 잔악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품위를 손상시키는 대우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 라) 노예처럼 되지 않을 권리
- 마) 강제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그러나 강제노동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제외
- 바) 사고, 양심과 종교의 자유
- 사) 견해와 표현의 자유. 이 권리의 다른이들의 권리와 명예를 존중하기 위해; 국가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과 도덕의 보호를 위해; 전쟁선동 방지를 위해; 민족적, 인종적 혹은 종교적 증오로 일어나는 차별, 적대감과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적일 수 있다.
  - 아) 임의적인 사생활, 통신, 대화 방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자) 재산소유의 권리
  - 차) 임의로 재산을 몰수당하지 않을 권리
  - 카) 관리, 개인, 그룹이나 단체가 가하는 폭력, 신체적 상해, 위협과 협박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포함한 개인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
  - 타) 손해당하지 않을 권리

- 파) 충분한 정보를 알 권리  
 하)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뿌리를 지킬 권리

## 2) 국제인권규약의 의의와 한국비준 상황

국제 사회에서 자국민에 대한 처우는 오랫동안 외국이 간섭할 수 없는 국내 문제로 간주되어왔다. 그러므로 인권의 국제적 보호 또는 국제기구에 의한 인권의 보호라는 개념의 등장은 지극히 현대적이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어떠한 이유에서든 보호할 국적국이 없는 경우에만 현지국의 재량에만 맡겨질 뿐이었다. 20세기 전반까지는 노예제도의 금지, 소수민족 보호, 난민 보호 등 제한된 분야에만 개인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호가 적용되었다. 유엔헌장에 명기된 이들 인권 조항은 무엇보다도 인권 문제의 '국제화'를 선언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가지고 있다. 즉 유엔 회원국은 더 이상 인권문제를 과거와 같이 국내 관할 사항이라고만 주장할 수 없게 되었으며, 유엔은 헌장상의 인권규정을 발판으로 인권보호에 관한 국제규범을 제정하고 이의 실천을 각 회원국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인권 기준에 관한 각종 선언과 포고령, 협약과 규약들은 각 국가들이 동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원칙이며, 기본적인 기준이다. 특히 1993년 비엔나에서 개최된 세계 인권회의는 인권보호에 관한 국제적 합의와 기준을 재확인, 확대하였는데, 그것은 다양한 문서들에 열거된 권리들이 모든 이에게 어디에서나 적용되고 정치적, 시민적 권리는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권리와 분리될 수 없음을 구체적으로 명시, 단언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80여 가지가 넘는 인권관련 국제조약 가운데에서도 특히 일곱 개의 주요문서를 '비준과 실행되어야 할 기본적인 조약'으로 규정한 바 있다. 그것은 'UN인권선언'과 더불어 '인권에 관한 국제헌장'이라고 불리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 조약',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비하적인 대우나 처벌에 반대하는 협약', '어린이 권리 조약' 그리고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 조약'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이상의 핵심 7개 인권 규약 중 '이주노동자 권리보호 조약'만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다.(표 3 참조)

표 3 주요 인권조약 한국비준 현황

조약명	채택일	발효일	한국비준일	당사국 수
1.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66.12.16	1976.1.3	1990.4.10	133
2.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66.12.16	1976.3.23	1990.4.10	132
3.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1966.12.16	1976.3.23	1990.4.10	87
4.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제 2 선택의정서	1989.12.15	1991.7.11	-	29
5. 학살 범죄에 대한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조약	1948.12. 9	1951.1.12	1950.10.14	117
6. 난민지위에 관한 조약	1951. 7.28	1954.4.22	1992.12.3	125
7. 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	1967.1.31	1967.10.4	1992.12.3	122
8.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1954.9.28	1960.6.6	1978.8.22	42
9.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1965.12.21	1969.1.4	1978.8.8	150
10. 인종차별적 범죄 금지와 제재에 관한 협약	1973.11.30	1976.7.18	-	89
11.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조약	1979.12.18	1981.9.3	1984.12.17	151
12. 고문 및 기타 잔악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비하적인 대우 또는 처벌에 반대하는 조약	1984.12.10	1987.6.26	1995. 1. 9	93
13. 운동경기상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조약	1985.12.10	1988.4.3	-	58
14. 어린이 권리 조약	1989.11.20	1990.9.2	1991.11.20	190
15.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약	1990.12.18	미발효	-	10 (99.현재)

출처 Human Rights International Instruments Chart of Ratification as at 31 December 1995(ST/HR/4/Rev.13)

\* 이주노동자 조약을 제외한 당사국 수는 1995년 12월 31일 기준임.  
 자료 : 국제 기구와 한국외교, 민음사, 1996에서 번역 제인용. (주) 각 조약명은 최대한 원문 뜻에 가깝게 번역한 것임)

### 3) 비준절차와 국내 인권기준 제고에 미치는 흐름

국제 협약은 입안 그룹의 합의에 기초하여 유엔총회에 제출되어 투표나 동의에 의한 채택절차를 거치게 된다. 본 조약은 1990년 12월 18일, 제 69차 국제연합 정기총회에서 정식적인 국제 규범으로 채택되었다.

이렇게 채택된 '국제 문서'는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예비)서명, 비준, 가입의 절차를 밟게되는데 국제 규범으로서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비준국이 최소한의 숫자에 달해야 한다. 이 최소 숫자는 대개 조약 자체에 정해져 있는데, 본 조약은 20개 국가의 비준을 필요로 한다. 조약이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는 것은 조약의 비준, 가입국가를 구속하게 된다는 것으로, 그 이전에는 (예비)서명국가에게만 구속력을 갖는다.

주로 각 국의 행정부를 통해 이루어지는 (예비)서명 단계에서 비준 단계로 넘어서는 과정에는 사법부와 입법부의 동의와 국내법과의 조율(국내법으로의 채택)이 필요한데, 관련된 입법조치를 취하고 곧바로 조약에 가입한다면 (예비)서명 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조약에 대한 당사국이 된다.

국제규범에 가입국이 된다는 것은 국제적인 기준의 국내법적 수용이라는 데에서도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이주민 조약은 그간 불분명하게 사용되어오던 이주민의 정의, 범주 등을 밝히고 있어 관련된 기타 인권개념을 보다 확장시키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국내법과 사법권을 발전시키는 데도 기여하게 된다.

## 3. 이주민 규약 비준 캠페인 활동

### 1) 이주민 조약 비준 캠페인은 어떻게 조직되고 수행되는가?

1990년 최초로 이주민에 대한 권리와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조약은 국제인권규약으로서 효력이 발효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 조약이 유엔 총회에서 통과된 이후 8년간 현재 전 세계에서 9개 국가만이 비준 혹은 가입하였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케이프 버드, 콜롬비아, 이집트, 모로코, 필리핀, 시셀스, 스리랑카, 우간다 등이다.

이상의 나라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은 대부분이 노동력 송출국이거나 이 조약의 구속력을 덜 받을 나라들이어서, 이 조약의 국제적 효력발생을 위한 범 세계적 캠페인이 현재 진행중이다. 미국에서는 난민 및 이민 권리옹호 전국네트워크(National Network for Immigrant and Refugee Rights)이 캠페인을 추동하고 있으며 특히 아직 까지 미국이 '여성차별철폐조약' 조차 비준하지 않은 것을 강조, 미국 내 인권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이 캠페인을 추동하고 있는 조직은 지난 94년 카이로에서 열린 인구와 개발에 관한 국제회의때 결성된 '국제이주노동자 권리감시 위원회'이다. 위원회는 올해 3월 유엔인권위원회 회기중 본 조약의 국제적 효력발생을 위한 전 세계적 캠페인을 가속화하기로 하고 선포식을 가졌다. 이 캠페인은 그러므로 국제조약을 인식할 수 있는 국제적 및 전국적으로 조직된 행동을 포함하고 있다. 이 활동의 주요 목적은 많은 나라들이 조약의 비준 및 승인을 하도록 응호하고, 국내법 기준에 부합되도록 하며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2) 어떻게 캠페인을 시작할 것인가? - 국제이주노동자 권리 감시위원회의 제안

가) 다른 단체나 개인과 함께 국내 캠페인을 수행하기 위한 전국비준위원회나 연합 결성. 가능한 한 광범위하고 관련 단체들과 민중조직을 포함하도록 한다. 인권단체, 교회, 노조, 이주민단체, 시민단체, 여성단체, 난민 및 기타.

나) 대중 교육, 인쇄물-라디오-TV 매체, 정부기구 내에 지원세력 구축, 정치인과 정부에 대한 로비 등을 포함한 국내 비준활동 전략을 짤 것.

다) 정당, 정치인과 공무원 및 관료들을 포함하여 이주노동자 조약에 대한 정치적 지원을 위한 단체나 개인들에 대한 확인 및 개발.

라) 국내 비정부단체들을 대상으로 조약과 실행 및 감시를 위한 세미나와 기타 훈련 프로그램 조직.

마) 전국적 캠페인과 국제 및 아시아 역내 네트워크를 위한 기금마련.

바) 기자와 편집자들에게 머릿기사와 기사내용에 대한 아이디어, 기사 배경 및 자료들을 공급하여 국내 여론에 이주노동자 이슈를 창출해낼 것.

## 참고자료

1. World Council of Churches, *A Moment to Choose: Risking to be with Uprooted People: a WCC Resource Book*. December 1996.
2. Asian Migrant Centre, *Asian Migrant Forum*, issue no. 11, November 1996.
3. International Migrants Rights Watch Committee, *Achieving Dignity: Campaigner's Handbook for the Migrants Rights Convention*,  
<http://www.migrantsrights.org/LAYHNDLK.INTRO.htm>
4. Philippine Migrants Rights Watch / Asia Partnership in International Migration, *Rights of Migrant Workers: A Primer on the UN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December 1997.
5. 국제 기구와 한국외교, 민음사, 1996.
6.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번역자료집, 1998
7.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주간이주노동자정보
8. 기타 신문자료: 한겨레신문 1998.1.6/ 1998.9.3/ 1998.10.14/ 1998.10.11/  
1998.11.30; 중앙일보 1998.3.29; 서울경제 1998.10.29

## Importance and Content of the Convention

- 본 글은 국제이주민권리감시위원회에서 이 조약에 대한 이해를 돋기 위해 대중적 교육용으로 만든 자료입니다. 이 글의 번역본은 외노협이 지난 98년 9월에 발간한 “번역자료 모음집”에 있습니다.-

### Why is the Convention important?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breaks new ground by extending protection for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world-wide. It also goes beyond simply applying existing human rights legislation to a specific category of individuals.

The Convention advances how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nceives of the application of human rights in its provisions for "equality of treatment" between women and men migrant workers, between documented and undocumented workers, and between nationals and non-nationals.

Its importance may be highlighted by these 10 points:

a.. The Convention recognizes the critical role which the migration of workers plays in the global economy. This affects a host of political, social, economic, ethical and legal issues for millions of individuals and numerous States which cannot be ignored. Yet migrant workers remain a largely unprotected group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 Today,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ies are often disregarded by their countries of origin, exploited by individuals, and have limited rights in States of employment where they are non-nationals. The Convention identifies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as

vulnerable persons in a global situation who are in need of the protection of their human rights and are entitled to the enjoyment of such rights regardless of their legal status. It extends human rights law to a specific category of individuals who currently lack protection. Its provisions would extend a measure of human rights protection to other categories of vulnerable migrants as well.

b.. The Convention is the most comprehensive international instrument to date on migrant workers. It provides a set of international standards to address (a) the treatment, welfare and rights of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and (b) the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States involved. These include sending States, States of transit, and host States, all of which benefit from the international migration of workers. Bilateral and regional agreements are important, but insufficient in addressing this global matter.

c.. The global community has for the first time an international definition of migrant worker, one which recognizes both men and women as migrants. The Convention also provides definitions of certain categories of migrant workers that are applicable to every region of the world.

d.. Migrant workers are considered more than laborers or economic entities. They are social entities with families. The Convention recognizes that they have rights accordingly, including that of family reunification.

e.. The Convention emphasizes that all migrant workers, whether in a documented or undocumented situation, are to be accorded fundamental human rights. It is inclusive of all migrant workers regardless of their legal status, but encourages their being in a documented or regular situation. It encourages all workers and employers to respect and comply with the laws and procedures of the States concerned.

f.. The Convention also extends the concept of "equality of treatment" by calling for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who are non-nationals in States of employment to be treated equally to nationals in certain situations. It thus reinforces the indivisibility of human rights regardless of nationality and national borders. Non-nationals, however, are

not to have more rights than nationals.

g.. It seeks to establish minimum standards of protection in legal, political, economic, civil, social and cultural rights for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which are universally acknowledged, while enabling States that desire so to provide additional protection in specific areas. Hence it also seeks to address those States that lack national standards of human rights protection and encourages them to bring their legislation in closer harmony with universal standards set forth in the Convention. States retain their right to determine who is admitted to their countries and their terms of residency.

h.. Overall, the Convention seeks to play a role in preventing and eliminating the exploitation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throughout the entire migration process. In particular, it seeks to put an end to the illegal or clandestine recruitment and trafficking of migrant workers and to discourage the employment of migrant workers in an irregular or undocumented situation.

i.. Finally, the Convention establishes mechanisms for its implementation which provide new opportunities for increased participation from the global community to protect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ies, especially NGOs and individuals.

## Highlights of the Convention

### Scope and definitions

a.. What extent of the migration experience does the Convention cover?

The Convention applies to the entire migration process of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It extends their rights and protection at all stages: preparation, recruitment, departure and transit; stay in States of employment; and their return to and resettlement in original homelands or States of residence (Art. 1).

a.. Who is a migrant worker? How do migrant workers differ from other migrants?

Not all migrants are migrant workers. For the first time in an international instrument, the Convention provides a definition of a migrant worker centered on engagement in a "remunerated activity." This definition is broad and includes protection those who are planning to become migrant workers, actually working outside their own country, or ending work abroad and returning to their homelands.

It states, "The term 'migrant worker' refers to a person who is to be engaged, is engaged or has been engaged in a remunerated activity in a State of which he or she is not a national" (Art. 2). Because each type of migrant has distinct issues, those who migrate as political refugees, employees of a State, students, investors, and so on should not be confused with migrant workers and their specific needs and concerns.

The Convention also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women as migrant workers in their own right in the definition of migrant worker. Reference is made throughout the Convention to ensure the full applicability of human rights legislation to female as well as male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a.. Are all migrant workers the same?

In addition to a general definition of migrant worker status, the Convention recognizes the complexity of the migrant worker situation in the contemporary world. It also provides definitions for specific categories of migrant workers, such as "frontier worker," "seasonal worker," "project-tied worker," and "self-employed worker (Art. 2)." The "self-employed worker" category recognizes the large number of migrant workers who operate a small family business by themselves or with other family members. Part V of the Convention elaborates which rights are to apply to which categories of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 families.

a.. Why are family members included in the Convention? Who is a family member of a migrant worker?

In a forward step in human rights legislation, the Convention considers migrant workers social entities as well as economic entities and favors the reunification of families of migrant workers.

It defines "members of the family" as "persons married to migrant workers or having with them a relationship that, according to applicable law, produces effects equivalent to marriage," and their dependants as recognized by the legislation of States concerned (Art. 4). This terminology takes into consideration the different forms of family relations globally. It also elaborates rights and protection to family members in a range of situations, especially in the host country with the migrant workers.

a.. Does the Convention exclude anyone?

For those who meet the definition of migrant worker and member of the family, the Convention has a nondiscrimination article and rejects distinctions of any kind such as sex, race, color, language, religion, political conviction, nationality, age, economic position, property, marital status, birth or other status (Art. 7).

#### Rights of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1)

The Convention defines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under two main headings: the human rights of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Part III) and other rights of migrant workers (Part IV). The human rights are applicable to all migrant workers irrespective of their legal status while the other rights are applicable only to migrant workers in a regular situation. However, the Convention does not exclude illegal workers. It contains provisions for the just treatment of illegal workers.

#### Human rights of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The Convention is not proposing new human rights exclusively for migrant workers. Part III of the Convention is a reiteration of the basic rights which are enshrin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elaborated in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now adopted by many nations.

Why are they then repeated here? The Convention seeks to draw the atten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the dehumanization of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many of whom are deprived of their basic human rights. Indeed, legislation implementing other basic treaties in some States utilizes terminology covering citizens and/or residents, *de jure* excluding many migrants, especially those in irregular situations.

#### Basic freedoms

Applying these fundamental rights to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the Convention provides for their right to leave and enter the State of origin (Art. I). The inhumane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and physical (and sexual) abuse that many migrant workers must endure are covered by the reaffirmation of their right to life (Art. 9) and prohibition against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rt. 10) as well as slavery or servitude and forced or compulsory labor (Art. 11).

Migrant workers are also entitled to basic freedoms like the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Art. 12), and the right to hold and express opinions (Art. 13). Their property should not be confiscated arbitrarily (Art. 15).

#### Due process

The Convention then goes on to explain in detail the need to ensure due process for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Art.

16 - 20). Investigations, arrests and detentions are to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established procedures. Their right to equality with nationals of the State before the courts and tribunals must be respected. They must be provided with necessary legal assistance, interpreters and information in a language understood by them. When imposing a sentence, humanitarian considerations regarding the person's migrant statu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The arbitrary expulsion of migrant workers is prohibited (Art. 22).

#### Right to privacy

A migrant worker is entitled to his or her honor and reputation and also to privacy, which extends to one's home, family and all communications (Art. 14).

#### Equality with nationals

Migrant workers are to be treated as equal to the nationals of the host country in respect of remuneration and conditions of work [overtime, hours of work, weekly rest, holidays with pay, safety, health, termination of work contract, minimum age, restrictions on home work, etc. (Art. 25)].

Equality with nationals extends also to social security benefits (Art. 27) and emergency medical care (Art. 28).

#### Transfer of earnings

On completion of their term of employment, migrant workers have the right to transfer their earnings and savings as well as their personal effects and belongings (Art. 32).

#### Right to information

They have the right to be informed by the States concerned

about their rights arising from the present Convention as well as the conditions of their admission, and their rights and obligations in those States. Such information should be made available to migrant workers free of charge and in a language understood by them (Art. 33).

Other rights of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who are documented or in a regular situation

By providing for additional rights for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in a regular situation, the Convention seeks to discourage illegal labor migration. Improvements in the situation of legal migrant workers would be an incentive for persons seeking overseas employment to enter the overseas labor market legally.

#### Right to be temporarily absent

Migrant workers should be allowed to be temporarily absent, for reasons of family needs and obligations, without effect on their authorization to stay or work.

#### Freedom of movement

They have the right to move freely in the territory of the State of employment and also to choose where they wish to reside (Art. 39).

#### Equality with nationals for access to educational, vocational and social services

In addition to the areas mentioned in Article 25,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shall enjoy equality with nationals of the State of employment in the following areas: access to education, vocational guidance and placement services, vocational training, retraining, housing including social housing schemes, protection against exploitation in respect of

rents, social and health services, cooperatives and self-managed enterprises, access to and participation in cultural life (Art. 43). Members of the families of migrant workers also shall enjoy equality with national of States of employment in having access to these services (Art. 45).

Migrant workers shall enjoy equality of treatment in respect of protection against dismissal, unemployment benefits, access to public work schemes intended to combat unemployment and access to alternative employment in the event of loss of work or termination of other remunerated activity (Art. 54).

#### Employment contract violations

When work contracts are violated by the employer, the migrant worker has the right to address his or her case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in the State of employment (Art. 54 (d)). And they shall have the right to equal treatment with nationals and be entitled to a fair and public hearing by a competent, independent and impartial tribunal established by law (Art. 18.1).

#### Rights of irregular ('illegal') workers

The Convention recognizes that "the human problems involved in migration are even more serious in the case of irregular migration" and the need to encourage appropriate action "to prevent and eliminate clandestine movements and trafficking in migrant workers, while at the same time assuring the protection of their fundamental rights" (Preamble).

As measures for preventing and eliminating illegal labor migration, the Convention proposes that the States concerned should collaborate in taking appropriate actions against the dissemination of misleading information relating to emigration and immigration, to detect and eradicate illegal or clandestine movements of migrant workers and impose sanctions on those who are responsible for organizing and operating such

movements as well as employers of illegal migrant workers (Art. 68). However, the fundamental rights of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are protected by the Convention (Art. 8 - 35).

#### Duties of all State Parties

Just as in the case of other international instruments,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hinges on the political will of the States concerned. The United Nations Organization does not have the power to enforce it in the territories of its member States. The UN system can only set standards and establish policy-making or monitoring bodies, such as th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and the respective treaty bodies.

Once a State ratifies the Convention, it undertakes not only to reaffirm these underlying principles, but also to put its provisions into practice. First, the provisions have to be integrated into national law so that they become legally binding within the State. Then, there are certain practical measures which both sending and receiving States are required to undertake, individually or in cooperation with each other.

#### Nondiscrimination

Both sending and receiving States are obliged to be nondiscriminatory in enabling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within their territories or jurisdiction to enjoy the rights set forth in the Convention (Art. 7). Nondiscrimination extends to migrant workers' sex, race, nationality, color, language, religion as well as to one's convictions, age, economic position, property, marital status, etc.

Promotion of sound equitable, humane and lawful conditions in connection with international migration of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States concerned are required to consult and collaborate with one another to ensure better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for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ies. Account must also be taken of their social economic, cultural and other needs as well as impact of migration on the communities concerned (Art. 64).

Appropriate services must be maintained by the States concerned for:

- th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migration policies;
- the exchange of information, consult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competent authorities of States concerned;
- the provision of appropriate information to employers and workers on policies and laws concerning migration;
- the provision of adequate consular services to meet the social, cultural and other needs of migrants;
- the regulation of recruitment of migrant workers by restricting it to public services or bodies of the States concerned and through private agencies and employers and their agents, subject to authorization, approval and supervision (Art. 65 & 66).

States concerned are required to consult and collaborate in preventing and eliminating illegal and clandestine movements of labor by:

- taking appropriate measures against the dissemination of misleading information relating to emigration and immigration;
- taking appropriate measures to detect and eradicate illegal labor migration;
- imposing sanctions on persons and entities, including employers, who are responsible for illegal movements of migrant workers

(Art. 68).

States concerned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not less favorable than those applied to nationals, to ensure that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are provided with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in keeping with standards of fitness, safety, health and human dignity (Art. 70).

#### Provision of information

If migrant workers are to benefit from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they must know what it is all about. All other rights depend on their right to adequate, relevant and factual information. Hence, the sending and receiving countries are required to provide information to migrant workers regarding the rights arising from the Convention (Art. 33).

Moreover, the sending and receiving States are also obliged to provide information to migrant workers, before their departure or entry into a receiving State, about the following: applicable conditions of their admission, stay and employment; rights and duties under the law in the receiving State; other matters that will facilitate their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in the receiving country; competent authority to whom recourse may be made for any change of these conditions (cf. also Art. 37).

Provision of relevant information to migrant workers should be free of charge and in a language understood by them.

Such information should be disseminated to others involved in the migration process as well: employers, trade unions and other relevant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 Institutions to address the needs of migrant workers

States concerned must establish institutions for the purpose of

taking into account the special needs, aspirations and obligations of migrant workers and enable them to be represented in these institutions (Art. 41).

#### Remittances, and tax and customs duty exemptions

The States concerned must permit and facilitate the transfer of the migrant workers' earnings and savings to their States of origin (Art. 47).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should not be made to pay taxes higher than those imposed on nationals. They shall enjoy equality with other nationals in the States concerned in regard to tax deductions and allowances. States should also consider the possibility of avoiding double taxation for migrant workers (Art. 48).

The States concerned must consider the possibility of granting exemptions of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from customs duties and taxes on their personal and household effects and equipment required for the remunerated activity in the State of employment (Art. 46).

#### Duties particular to sending countries

#### Emigration of workers

Persons seeking employment abroad should be allowed to leave and enter the country of origin (Art. 8).

#### Pre-departure information

Before the departure of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to the States of employment, they must be fully informed of all conditions applicable to their admission, stay and employment as well as other requirements (Art. 37).

#### Exercise of political rights of migrants

States of origin must facilitate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to participate in public affairs, vote and be elected in elections in their home countries. (Art. 41).

#### Provision of adequate consular services

Sending States should provide adequate consular and other services required to meet the social economic, cultural and other needs of their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Art. 65.2).

#### Regulation of recruitment

Recruitment of workers for overseas employment should be regulated by restricting it to public services or bodies of the sending State. Recruitment by agencies, employers and their agents should be subject to authorization, approval and supervision (Ar. 66).

#### Resettlement of migrant workers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including illegal migrants, must be assisted to make an orderly return to their home countries. The States of origin must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promote adequate economic conditions for their resettlement, and social and cultural reintegration (Art. 67).

#### Duties particular to States of employment

####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s

####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ies, including those arrested or

detained, must be given protection against violence and other forms of harassment by private individuals, public officials, groups or institutions (Art. 16 and 17).

####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of migrant workers must be in keeping with the standards of fitness, safety, health and principles of human dignity (Art. 70).

#### Confiscation of property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should not be arbitrarily deprived of their property. If their assets are to be confiscated under the laws of the State of employment, adequate compensation must be paid (Art. 15).

#### Equal status with nationals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must be enabled to enjoy equality with nationals of the State of employment before the courts of law and tribunals (Art. 18). Equality with nationals shall also apply to remuneration, conditions of work, e.g. overtime, hours of work, weekly rest, holidays with pay, safety, termination of contract, etc. (Art. 25) as well as access to education, vocational training, guidance and placement, housing including social housing schemes, social and health services (Art. 43) and social security (Art. 27).

Children of migrant workers, including those of illegal workers, shall also be given equality with nationals in gaining access to education, including preschool education (Art. 30).

#### Trade union activities

The States of employment must permit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to join or form trade unions and associations for the protection of their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other rights (Art. 26).

#### Protection of their personal documents

States of employment must ensure that the identity documents, work and residence permits of migrant workers are not confiscated or destroyed by unauthorized persons and that their passports are not destroyed by anyone (Art. 24).

#### Family reunification

States of employment shall consider the possibility of enabling the members of the family to join the migrant worker, in order to protect the unity of the family (Art. 44).

#### States'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 Reporting

The States concerned are required to submit a report to the Committee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2), within one year after the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on the legislative, judicial, administrative and other measures they have taken to implement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Thereafter, reports must be submitted every five years or whenever the Committee so requests (Art. 73).

#### No compulsion on migrant workers to renounce their rights

The States concerned shall not exert pressures on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to relinquish or forego these rights

arising from the Convention (Art. 82).

Moreover, the States concerned must ensure the recognition of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and provide effective remedies for violations of such rights (Art. 83).

#### Notes:

(1) The remaining text in this chapter is excerpted from the Migrant Forum in Asia publication "Ratifying UN Convention Protecting Migrant Workers" MIGRANT WOMEN Quest for Justice.

(2) The Committee is the treaty body for the Convention. By adhering to a treaty, States Parties agree to engage in a dialogue with the relevant treaty body. They assume a legal obligation to submit periodic "State reports" outlining the legislative, judicial, administrative and other measures they have taken to ensure the enjoyment of the rights contained in the treaty. Treaty bodies normally examine State reports in the presence of representatives of the Government and conclude with the adoption of "concluding observations" or "concluding comments".

##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조약 전문(前文)

### 이 조약의 체약국은

인권에 관한 국제연합의 기본적인 합의문서, 특히 세계인권선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조약, 어린이권리조약에 담긴 기본원칙을 고려하고 또한,

국제노동기구의 테두리 속에서 형성된 관련 합의문서 특히 취업을 위한 이주에 관한 조약(97호 조약), 학대 상황의 이주 및 이주노동자의 기회 평등과 처우에 관한 조약(143호 조약), 취업을 위한 이주에 관한 권고(86호 권고), 이주 노동자에 관한 권고(151호 권고),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29호 조약),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조약(105호 조약)이 명시한 원칙과 기준을 고려해서,

유네스코의 교육상 차별을 금지하는 조약에 포함되는 원칙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고문 및 기타 잔악한 비인도적인 또는 품위를 손상시키는 취급 또는 형벌을 금지하는 조약, 범죄방지 및 범인 취급에 관한 제4회 국제연합회의선언, 법집행관을 위한 행동강령, 노예제 폐지에 관한 제 조약을 상기하고,

나아가 국제노동기구가 표방하는 목적의 하나인 자국 이외의 나라에서 취업한 노동자의 이익 보호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 관련 사항에 관한 이 기구의 지식과 경험을 상기해서, 국제연합의 다양한 기관, 특히 인권위원회, 사회개발위원회 및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국제기구가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해 행한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나아가 몇몇 나라에서 지역적 합의 내지 양자간 합의를 기초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대해 이룩한 성과와 이 영역에서의 양자간 및 다자간 합의의 중요성과 유용성을 인식하고,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개입되고 많은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주현상의 중대성과 확산을 이해하고,

이주노동자 집단이 관계국과 그 국민에게 미치는 충격을 인식하고, 관계국들이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처우에 관한 기본원칙을 수용함으로써 국가간의 조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규범의 확립을 회구하고,

여러 원인, 특히 출신국에 거주하지 않은 것 및 취업국에 체재하는 데서 직면하는 어려움으로 인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이 종종 공격을 받기 쉬운 상태에 있음을 고려해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가 충분히 인식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적절한 국제적 보호가 필요함을 확신하고,

이주는 가족의 이산을 수반하므로 이주노동자 자신들에게나 이주노동자 가족에게 종종 심각한 문제의 원인이 됨을 고려하고,

이주에 포함되는 인도적인 제 문제는 불법 이주의 경우에 한층 심각하다는 것에 유의해서, 그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면서 이주노동자의 은밀한 이동이나 인신매매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적절한 행동이 취해져야 함을 확신하고, 미등록이거나 불법적 상황에 있는 이주노동자는 종종 다른 노동자보다도 불리한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으며, 어떤 고용주들은 이를 불공정한 경쟁으로 이익을 얻는 동기로 삼는 것을 고려하여,

모든 이주노동자의 기본 인권이 보다 광범위하게 인정된다면 불법적 지위의 이주노동에 기대하는 것을 멈출 것이며 나아가 합법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확실한 보충적 권리를 인정한다면 모든 이주노동자와 고용주가 그 나라의 법률과 절차를 존중하고 복종할 것을 촉진할 것임을 배려해고,

그러므로 보편적으로 적용될 포괄적인 조건에 의거 기본이 되는 규범을 재확인하고 확립해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국제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신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조약의 구성

조약은 전문(前文)에 이어 9개 부분으로 나뉜 93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前文)에는 본 조약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서 명시하였다.

제 1부는 범위와 정의(제 1조~제 6조)

제 2부는 권리에 관한 비차별 규정(제 7조)

제 3부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인권(제 8조~제 35조)

제 4부는 합법적이거나 정규 상황에 있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기타 권리  
(제 36조~56조)

제 5부는 특정 범주의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적용 가능한 규정들(제 57조~63조)

제 6부는 국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 구성원과 관련한 건전하고 평등하고 인간적이고 합법적인 조건의 촉진(제 64조~제 71조)

제 7부는 조약의 적용(제 72조~제 78조)

제 8부는 일반조항(제 79조~제 84조)

제 9부는 최종조항(제 85조~제 93조)

으로 구성되어 있다.

# 본 조약(The Convention)의 중요성과 그 내용 요약

## 1-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구성원의 권리

조약은 두 개의 표제 아래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인권(제3부)과 이주노동자의 다른 권리(제4부). 법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인권이 적용되지만 다른 권리는 합법적 상황하의 이주노동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 조약이 불법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불법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처우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전문, 제 3부)

## 2-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인권

본 조약은 이주 노동자만을 위한 새로운 인권을 배타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본 조약의 제 3부(제 3부)는, 세계 인권 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에 담겨 있고 현재 많은 국가가 채택한 여러 국제 인권 조약들(treaties)에 상세히 설명된 기본권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이 여기에 왜 다시 반복되어야 하는가? 본 조약은 기본적인 인권을 박탈당한 수많은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비인간화된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한다. 사실, 몇 국가에서 입법실행되고 있는 기본 조약들은 '시민' 또는 '거주민' 등의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는 많은 이주민들, 특히 불법적 상황에 있는 이들을 배제하면서 이용되고 있다.

## 3- 기본적 자유권

이러한 근본적인 권리를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적용시키면서, 본 조약은 그들이 본국을 떠나고 입국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제 1조). 본 조약은 '삶의 권리' (제 9조),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처벌행위에 대한 금지' 그리고 '노예제나 강제노동 금지' 등을 재확인함으로써,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참고 견뎌야만 하는 비인간적인 생활조건과 노동환경, 신체적 학대(그리고 성적유린) 등을 포함해 다룬다. (제 11조).

이주 노동자들은 또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등과 같은 기본적 자유를 누릴 권리와 함께(제 12조) 표현의 자유 또한 지닌다 (제 13조). 그들의 재산은 임의로 압수될 수 없다 (제 15조).

## 4- 정당한 법적 절차 (due process)

본 조약의 다음 조항들은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필요한 정당한 법적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제16조 - 20조). 수사, 구속, 구금 등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는 법(법원과 법관) 앞에서 그 국가의 국민들과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그들은 필요한 법적 지원과 통역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정보나 자료들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한다. 그들이 법정 선고를 받을 때에는, 그들이 외국인이라는 신분에 대한 인도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임의 추방은 금지된다 (제 22조).

## 5- 사생활에 대한 권리

이주 노동자는 자신의 명예와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지니며, 이 권리의 그 가족과 그들의 의사 소통 전 영역에 걸쳐 해당된다.

## 6- 해당 국가의 국민들과의 평등권

이주 노동자들은 급료와 작업환경(초과작업시간, 노동시간, 주중휴무, 유급휴가, 안전, 건강 및 의료, 노동계약만료, 해당 직업을 위한 최소 연령 제한, 재택 근무에 대한 규제 등을 포함한)에 있어서 해당국가의 자국민들과 평등하게 대우되어야 한다. (제 25조) 해당국가 국민들과의 평등권은 또한 사회안전 혜택 (제 27조)과 응급 진료혜택(제 28조) 등에도 적용된다.

## 7- 급료에 대한 자국으로의 송금

고용계약 만료시, 이주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급료와 저축 및 개인 재산, 소지품 등을 본국으로 보낼 권리와 가진다.

## 8- 정보에 대한 권리

이주 노동자들은 해당 국가로부터 입국조건, 권리와 의무 등과 함께 현 조약에서 제기하고 있는 그들의 권리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이러한 정보는 무료로 이주 노동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되어야 한다 (제 33조).

## 9- 합법적이거나 정규 상황에 있는 이주 노동자와 가족들의 기타 권리

본 조약은 합법적인 상태에 있는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기타 권리를 밝혀둠으로써 불법적인 노동력의 이동을 줄이고자 한다. 합법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향상은 해외 노동시장에 합법적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이들을 고무할 것이다.

## 10- 일시적인, 또는 단기적인 결근에 대한 권리

이주 노동자들은 집안 사정과 가족의 의무를 이유로, 체류나 근로허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일시적 혹은 단기적으로 결근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 11- 거주 이전의 자유

이주노동자들은 자신들이 고용된 해당국가 영토 내에서 자유로이 이동할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살 곳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 12- 교육, 직업, 사회 복지 등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해당국민과의 평등권

제 25조에 언급된 영역 이외에도,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그가 고용된 해당국가의 자국민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 교육, 직업 안내 및 취업알선 서비스, 직업훈련, 직업 재훈련, 주택정책을 포함한 주거관련 서비스, 집세 등과 관련한 부당한 피해로부터의 보호, 사회복지 및 의료제도, 협동조합 내지는 자영업 등 영역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문화적인 삶을 위한 접근과 참여의 권리(제 43조). 이주 노동자의 가족들 또한 이상에 열거된 영역에 있어서 해당국 자국민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제 45조)

이주 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해고로부터의 보호, 실업수당 내지혜택, 실업 해소의 일환으로 고안된 공공 사업 등에 대한 접근 가능; 그리고 직장을 잃거나 기타 유급활동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있어서 대안적인 고용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제 54호)

## 13- 고용 계약 위반

고용주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이주 노동자는 이를 고용당국의 해당 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 54조 (d)). 그리고 그들은 자국민의 경우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와, 법이 정한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정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청취를 가질 권리를 지닌다. (제 18조 1항)

## 14- 불법 체류 노동자의 권리

본 조약은 '이주와 관련된 인간의 문제는 불법이주의 경우에 훨씬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한 '비밀리에 행해지는 외국인노동자의 이주와 그들에 대한 인신매매를 막고 근절시키는 한편, 이주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행동을 장려할 필요를 인정한다. (전문)

불법 혹은 비밀리에 행해지는 이주 노동자의 이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

런 이주를 조직, 조장하는 이들과 불법 외국인노동자의 고용주들에 대해 국제적인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 본 협약은 불법적인 노동력의 이주를 막고 없애기 위한 수단으로서 관련 국가들이 타국이나 관련국으로의 이민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는 것에 대항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협력할 것을 제안한다(제 68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기본 권리는 본 조약에 의해 보호받는다(제 8-35 조).

## 15- 모든 당사국들의 의무

다른 모든 국제조약과 마찬가지로, 본 조약의 성공적인 적용은 관련국가의 정치적인 의지에 달려있다. 국제연합 기구는 가입국 영내에서 이를 강제할 권한이 없다. 국제연합 체제는 유엔 인권위원회나 개별 조약기구와 같이 단지 규범을 수립하고 정책을 결정하거나 감시하는 기구를 설치할 수 있을 뿐이다.

일단 한 국가가 조약을 비준하면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을 재확인할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조항들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 우선 조항들이 국내에서 구속력을 지니기 위해 국내법에 통합되어야 한다. 그 이후에 개별적으로 혹은 상호 협력하여 송출국과 수입국 모두가 실질적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 16- 차별금지

송출국과 수입국 모두는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그들의 영토와 관할권 내에서 조약에 다뤄진 권리를 누리는 데에 차별적이어서는 안된다(제7조). 차별금지는 이주 노동자의 성별, 인종, 국적, 피부색, 언어, 종교 뿐 아니라 신념, 나이, 경제적 지위, 재산의 유무, 혼인상의 지위 등에 까지 확대된다.

## 17- 국제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에 관련한 건전하고 공평하고, 인간적이고 법적인 조건의 촉진

관련 국가들은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보다 나은 삶과 작업환경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서로 협의, 협력할 필요가 있다. 그들의 사회, 경제, 문화적 및 다른 욕구들과 함께, 해당 사회의 이주에 대한 충격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제64조).

관련 국가들은 다음과 같은 적절한 업무를 유지해야 한다.

- 이주 정책의 수립과 이행
- 관련국 주무관청 간의 정보교환, 협의, 그리고 협력
- 이주에 관한 정책, 법률에 대하여 고용주와 노동자에게 적절한 정보 제공
- 이주민의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다른 요구를 충족시킬 적절한 영사업무의 제공

- 관공서 또는 관련 국가의 기구에 의하거나 승인, 허가, 감독을 받는 사설기관, 고용주들과 그들의 대행업체를 통한 이주 노동자 채용 규제 (제65조, 66조)

관련국가들은 다음과 같이 불법적이고 비밀리에 진행되는 노동력의 이동을 예방하고 근절함에 있어 협의, 협력해야 한다.

- 이주, 이민에 관한 잘못된 정보의 유포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함
- 불법 이주 노동을 탐지하고 근절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 고용주를 포함하여 불법적인 이주 노동을 조장한 사람과 기관들에 제재를 가해야 함(제68조)

관련국들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안전, 건강, 인간 존엄성의 기준에 적합한 일과 생활환경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 자국인에게 적용되는 만큼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70조).

#### 18- 정보 제공

이주노동자가 본 조약의 조항들로 인해 혜택을 받는다면, 그들은 그것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알아야 한다. 모든 기타 권리들은 적절하고 관련성 있으며 사실에 입각한 정보에 관한 그들의 권리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송출국과 수입국은 조약에 기인한 권리에 관한 정보를 이주노동자에게 제공해야 한다(제33조).

계다가 송출국과 수입국은 이주노동자의 출국 또는 수입국으로의 입국 전에 이주노동자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들의 입국, 체류, 고용에 적용되는 조건들; 수입국 법률 하에서의 권리와 의무; 수입국에서 요구 조건들을 수행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문제들; 이런 조건들의 변동에 대해 호소할 수 있는 주무 관청(37조 참조). 이주노동자 관련 정보는 무료로 제공되어야 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기되어야 한다. 그러한 정보는 또한 이주 과정에 관계된 다른 사람들 즉 고용주들, 노조와 기타 유관 기관과 단체에게도 유포되어야 한다.

#### 19- 이주노동자의 요구를 대변할 수 있는 기관

관련 국가들은 이주노동자들의 특별한 요구, 염원과 의무를 고려할 목적의 기관들을 설립하고 이런 기관들이 그들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제41조).

#### 20- 송금, 세금과 세관 면제

관련 국가들은 이주노동자들의 소득과 예금의 본국으로의 송금을 허가하고 용이하게

해야 한다.(제47조)

이주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은 자국민에게 부과되는 세금 이상을 내서는 안 된다. 그들은 과세 공제와 세금 할인에 관해 관련국의 자국민과 같이 형평성을 누린다. 국가들은 또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중과세를 피하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제48조). 관련 국가들은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세관의 세금, 그들의 개인적, 가구의 재산에 대한 세금, 그리고 고용국에 이익이 되는 활동에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제46조).

#### 21- 송출국에 한정된 임무

##### - 노동자의 이민

해외에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출국과 본국 입국이 허용되어야 한다(제8조).

##### - 사전 출국 정보

노동자와 그의 가족이 고용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그들은 그들의 입국, 체류, 고용뿐 아니라 다른 필요조건들에 적용되는 모든 조건들에 대해 완전히 알아야 한다(제37조).

##### - 이주민의 정치적 권리 행사

본국은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본국에서 일어나는 공무와 투표에 참가하고 그들이 선거에서 선출되는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정치적 권리 행사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제41조).

##### - 적절한 영사업무의 제공

송출국들은 그들의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사회,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다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영사와 다른 업무를 제공해야 한다(제65조 2항).

##### - 고용 규제

해외 고용을 위한 노동자의 채용은 그것을 공공회사나 송출국가의 기구에 제한함으로써 규제되어야 한다. 고용업체, 고용주들과 그들의 대행인들에 의한 고용은 승인, 허가, 감독 받아야 한다(제66조).

##### - 이주노동자의 재정착

불법 이주자를 포함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합법적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지원받아야 한다. 본국은 그들의 재정착과 사회, 문화적 재통합을 위해 적합한 경제적 환경을

촉진시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67조).

## 22. 고용국에 한정된 의무

### - 개인의 자유와 안전

체포되거나 감금된 이들을 포함해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민간인, 공무원, 단체 또는 기관들에 의한 폭력과 다른 형태의 학대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제16,17조).

### - 작업과 생활환경

이주 노동자의 작업과 생활환경은 안전, 건강, 인간 존엄성의 원칙에 부합되어야 한다(제70조).

### - 재산 몰수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재산은 임의로 빼앗길 수 없다. 만약 그들의 재산이 고용국의 법률에 의해 몰수된다면 그에 따른 적합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제15조).

### - 자국민과의 동등한 지위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법률과 법정재판에 있어서 고용국 자국민과 같은 형평성을 누려야 한다(제18조). 자국민과의 평등은 급료, 작업환경, 예를 들어 시간외 노동, 근로 시간, 주휴, 유급휴가, 안전, 계약의 종료(제25조) 뿐만 아니라 교육 기회, 직업훈련, 지도와 배치, 사회적 주택공급 계획을 포함한 주택공급, 사회 건강 서비스(제 43조) 및 사회 보장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불법 노동자를 포함한 이주 노동자의 자녀들 또한 취학 전 교육을 포함한 교육의 기회에 있어서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제30조).

### - 노동 조합 활동

고용국들은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그들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기타 권리의 보호를 위해 노조나 협회에 가입하거나 이를 조직하는 것을 허가해야 한다(제26조).

### - 개인적 서류의 보호

고용국들은 이주 노동자의 신분 증명서, 근로와 주거 허가증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 몰수되거나 파기되지 않으며 그들의 여권이 누구에 의해서도 파기되지 않도록 보장해주어야 한다(제24조).

### - 가족 재결합

고용국가들은 가족의 화합을 위하여 이주 노동자 가족들이 이주노동자와 재결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제44조).

## 본 조약의 비준과 효력발생 과정 및 본 조약의 비준 측구활동 경과

국제 협약은 입안 그룹의 합의에 기초하여 유엔총회에 제출되어 투표나 동의에 의한 채택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본 조약은 1990년 12월 18일, 제 69차 UN정기 총회에서 정식적인 국제 규범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렇게 채택된 ‘국제 문서’는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예비)서명, 비준, 가입의 절차를 밟게되는데 국제 규범으로서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비준국이 최소한의 숫자에 달해야 합니다. 이 최소 숫자는 대개 조약 자체에 정해져 있는데, 본 조약은 20개 국가의 비준을 필요로 합니다. 조약이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는 것은 조약의 비준, 가입국가를 구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예비)서명국가에게만 구속력을 갖습니다.

주로 각 국의 행정부를 통해 이루어지는 (예비)서명 단계에서 비준 단계로 넘어서는 과정에는 사법부와 입법부의 동의와 국내법과의 조율(국내법으로의 채택)이 필요한데, 관련된 입법조치를 취하고 곧바로 조약에 가입한다면 (예비)서명 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조약에 대한 당사국이 됩니다.

현재 본 조약은 현재까지 9개국이 비준하였으며 이 중 아시아에서는 필리핀과 스리랑카 만이 비준하고 있습니다.

지난 94년 카이로에서 열린 인구와 개발에 관한 UN회의에서 결성된 이주노동자 관련 국제 네트워크인 ‘국제 이주노동자 권리감시 위원회’(International Migrants Rights Watch Committee)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 이주노동자 관련 네트워크 운동체들은 올해가 세계 인권선언 50주년인 점을 착목하여 본 조약에 대한 범 세계적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8' APEC 민중회의, APPA(Asia Pacific People's Assembly)(11.10-11.15, 말레이시아)에서는 “이주노동자의 권리는 곧 인권”(Migrant's Rights are Human Rights!)이라는 주제하의 전 아시아지역 공동 캠페인을 결의하고 홍보 포스터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또 많은 나라에서 본 조약의 UN총회 통과일인 12월 18일(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을 기념하여 연대행동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국제규범에 가입국이 된다는 것은 국내법적 수용이라는데에서도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국내법이 정교하게 갖춰질 수 있는 기준과 정의, 나아가 세세한 법적 용어까지 제공하므로 가입국의 국내법과 사법권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

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인권기구 설립에 있어서도 인종 및 국가차별, 법적 신분에 의한 차별 등에 세심한 기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인식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이주노동자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원칙을 제공할 것입니다.



## Migrant's Rights are Human Rights!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약 (A/RES/45/158, 제 69차 본회의 1990.12.18)에 대한 비준 촉구문

UN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50주년을 맞이하는 98년을 맞이하여 한국 정부는 '인권법 제정과 인권기구 설치'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권 수준이 국제적 기준을 채택하고 그 실현 의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이라는 개념조차 구체화되지 않은 채로 추상적인 인권 보호 의지는 자칫 흥 보용으로 전락하거나 그 효과가 널리 미치지 않아 또 하나의 인권소외를 가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경제, 정치, 사회, 문화적인 소외를 극복시키고 모든 조건 하에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합당한 원칙을 세우는 일인 '인권'이라는 개념의 기본적 힘의 아작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전제되지 않았다는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권리 인식입니다. 유엔 인권선언이 서두에서 강조하는 "(각설) 인류 모든 성원의 타고난 존엄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 대한 인식은 세계의 자유, 정의, 그리고 평화의 근간이다"라는 원칙 속에 이주노동자의 권리도 당연히 포함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은 아직 그리 많지 않습니다. 더욱이 한국 및 아시아의 경제 위기 상황 이후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운운하는 것조차 반(反) 애국적인 혐의를 받기도 하는 사회, 문화적 편견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권 기준에 관한 각종 선언과 포고령(Proclamation), 협약과 규약들은 각 국가들이 동의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인 원칙이며 따라야 하는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특히 1993년 빈에서 개최된 인권에 관한 세계 회의(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uman Rights)는 인권보호에 관한 확대와 팽창과 확대의 시기를 결정에 이르게 하였는데, 그것은 다양한 문서들에 열거된 권리들이 모든 이에게 어디에서나 적용되고 정치적, 시민적 권리와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권리와 분리될 수 없음을 구체적으로 명시, 단언하였습 니다. 이 회의에서는 80여가지가 넘는 인권관련 국제조약에서도 특히 일곱 개의 주요문서

를 '비준과 수행이 보편적이어야 하는 기본적인 조약'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것은 'UN인권선언'과 더불어 '인권에 관한 국제헌장(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이라고 이야기되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을 포함하여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의 철폐에 관한 협약', '고문과 다른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비하적인 대우나 처벌에 반대하는 협약', '아동들의 권리에 관한 협약' 그리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권리와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이 포함됩니다. 사실상 세계 모든 정부의 대표자들에 의해 채택된 이 비엔나 선언과 행동 계획(The Vienna Declaration and Plan of Action)은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을 강조하였으므로 위의 7가지 핵심 협약만은 기본적으로 비준하여야 할 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한국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권리와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만을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히 '이주민과 그 가족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조약'에 한국이 서둘러 가입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즉 인권기구의 발족을 앞두고 있는 한국 정부의 인권보장 개선의지가 국제적 표준에 맞춰 온전하게 그 빛을 발할 수 있으려면 인권관련 핵심 조약인 위 조약에 서둘러 비준을 하는 실천적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불법체류자(미동록취업자) 1위는 한국인입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한국의 경제 상황 악화 이후 해외취업자는 날로 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의 사기 피해 및 인권유린이 우려의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정부는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도 없이 국내 실업률을 해소하는 방편으로써 "해외 건설현장에 내국인이 취업할 경우 숙박비를 간접 지급하거나 어학 교육비를 보조하는 등 내년까지 20,000여 명을 해외에 취업시킬 방침"이라고 천명하였습니다. 송출국과 유입국의 틈바구니에서 가장 쉽게 방치되는 것이 이주노동자의 권리이며, 경제가 조금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배타되는 대상이 또한 이주노동자의 존재입니다. 해외로 진출한 이주노동자는 자국과 유입국의 외교정책에서 완전히 소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자국이 해외로 진출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의지를 가진다 해도 위와 같은 조약이 없다면 자국의 정부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입국이자 송출국이기도 한 한국이 스스로 본 조약의 비준에 앞장서고 상대 유입국의 비준을 촉구하는 외교적 노력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 ▣ 한국 정부는 '아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조약'에 비준하라.
- ▣ 위 조약에 근거하여 헌법 및 노동법, 신설되는 인권기구법 등 재한 아주노동자의 실질적 권리향상을 위한 법, 제도적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 인권국가로서의 성실한 노력과 외교적 교섭을 통해 한국인 주요 진출국에 대한 비준 촉구 활동을 전개하라.
- ▣ 본 조약의 기입을 통하여 해외 진출 한국인노동자에 대한 인권보장을 제도화하고 이후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전개하여야 한다.

1998년 12월 9일

● 노동계 이갑용 민주노총 위원장 외 16인

● 학계, 법조계 최영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표 외 45명

● 종교계 김수환 추기경 외 72명

● 여성계 이우정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대표 외 15명

● 사회단체 백기완 민족문화대학 설립위원회 대표 외 127명

● 외국인노동자대체협의회 대표단 박천웅 외 23명

## MFA statement for the International Solidarity Day

Migrants' Rights are Human Rights!

Uphold Migrants' Rights! Ratify the UN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All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ies!

December 18th, 1998 marks the second year in which we celebrate the International Solidarity Day with Migrant Workers. Today we, the Migrant Forum in Asia, a network of over 40 migrant advocacy and support groups from South, Southeast and East Asia, come together in our respective countries to show our solidarity with migrant workers, to continue to forge a migrants movement, and to call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recognize the basic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by ratify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All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ies.

Migrants are human beings. Migrants are, therefore, entitled to the same human rights enjoyed by all peoples all over the world.

These rights are enshrin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nd other international treaties. In fact, December 10 marks the 50th anniversary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and is celebrated annually as Human Rights day.

Migrants are workers. As workers, migrants are covered by the internationally recognized labor laws and standards including the right to organize, form associations, demonstrate, not be discriminated against, and to be paid equal wages for equal work.

Women migrant workers' rights are further promoted by international conventions against discrimination which recognize the value and central contribution of women in society.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ies have particular rights. These rights are enshrined 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This convention was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on December 18, 1990 and guarantees the following rights: the right to life; to freedom to leave a country, and to enter and remain in one's country of origin; to protection against slavery, torture, and forced labor; to property; to freedom from harm; to social security; to form and join associations and trade unions; to transfer earnings and savings, etc.

National laws and policies are supposed to embody these international treaties and standards to promote labor and women and migrant workers' rights. The labor sending and receiving countries are supposed to implement migrant protection laws to ensure just and fair treatment of migrant workers.

Also, bilateral labor agreements (BLA) and memoranda of understanding (MOU) between sending and receiving countries are essential.

Unfortunately, there is a wide gap between the laws on paper and the actual situation of migrant workers. Even the conventions stated above, limited as they are, have not been ratified by many countries.

The 1990 migrants rights convention is the most dramatic example.

Eight years after its adoption, it is still not in effect because only 10 countries out of the 20 required have ratified. In Asia, among the countries that import or export the largest number of migrant workers, only Bangladesh, the Philippines and Sri Lanka have ratified the Convention. Due to these reasons, there are countless violations of migrants rights everywhere, everyday.

Therefore, we urge governments to:

Protect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Ratify the UN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All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ies!

18 December 1998

MFA / JCMK



## 가종 회의 자료와 보고서

- ASEM 민족회의(98.3.24)
  - 한국 이주노동자 현황 보고서, 외노협 국제업무부
- 이주노동자와 아시아 경제의 위기: 노동조합의 입장 워크샵(98.11.5-6)
  - 에버트 재단 노동자로선탑, 민주총의 한국보고서 및 참가보고서
- APPACASIA PACIFIC PEOPLES ASSOCIATION 이주노동자워크샵(98.11.10-15)
  - 외노협 보고서 및 참가보고서
- 이주노동자포럼선언문(98.11.10)
- 한국해외작자기업감시 제 2차 국제회의 : 인권노동환경보호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98.12.12-13)
  - 기업 공동강령
- 이주노동자 권리옹호 캠페인과 대안적 저축에 관한 아시아협의회(98.12.16-20)
  - 참가보고서

## **South Korea Report: impact on Migrant Workers**

Conference on the Social and Political Dimensions of the Asian Economic Crisis

Hyewon Chong, JCMK  
jcmk@chollian.net,

Korea's migrant workers number around 290,000 and are from: China (ethnic Koreans displaced into China by Japan during Colonialism, coming back to Korea), the Philippines, Bangladesh, Nepal, Pakistan, Indonesia, Malaysia, Burma, Thailand, Sri Lanka, Vietnam, Peru, the Middle East, the former Soviet Union and diverse nations in Africa. That migrant workers from Nigeria come to Korea, instead of, say, to France which is geographically closer and where wages are higher points to the influence of the NIC's new TNCs, that is, Korea's chaebols which have set up branches abroad and directly relocate foreigners to work in Korea's "3-D" (Dirty, Difficult, Dangerous) manufacturing and construction sector as trainees. Called "trainees" instead of workers, these migrants are denied the workers' 3 basic rights to unionize, to collective bargaining and to collective action. Trainees are sometimes beaten, paid low wages, subject to poor work conditions leading to a high casualty rate of lost hands/arms/lives to industrial accident\*, and exploited by employment brokers who charge US\$2000, US\$3000 and even US\$8000 for a placement in Korea. With brokers fees so high, even though brokers subtract wages from trainees monthly salary, it becomes very difficult to pay them back, and many migrants run away from their trainee workplaces to become undocumented workers, whose salary more closely approximates labor market levels (80% of Korean's salary as opposed to 60% or in particularly severe cases as low as 5%).

As the weakened Korean economy contracts, the 146,000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are the ones being squeezed out. However even as Korea's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announced plans to expel 120,000 migrants as a strategy to contain burgeoning unemployment among Koreans (to "open up" 3-D jobs to Korean workers). Many of the migrants' home countries however are reluctant to take their nationals back, or

are at least exacting more money from those who are going back. For example, the Philippines embassy in Korea raised passport renewal rates to US\$90 in December and increased travel document fees from 29,000 won to 60,000 won for Filipino migrants. Additionally, whereas the Korean currency currently drifts between 1400 won and 1600 won to the dollar, the Philippine embassy in Korea charges 2000 won to the dollar. In the case of the Philippines, with over 2 million overseas contract workers sending billions of US dollars home

\* industrial accident rates are quite high, even among Korean workers: in 1993, 2210 Korean workers died from industrial accident; in 1994, it was 2678, in 1995, 2662, in 1996 it was 2670 and as of October of 1997 2222 Korean workers died in industrial accident. It is believed that migrant workers have a higher rate of industrial accident owing to discriminatory allotment of job tasks as well as language difficulty and lack of training. every year, what would the Philippines government do about domestic unemployment if even 1/4 of them decided to go back to the Philippines because of the Asian Financial Crisis? Thus, migrant workers are caught between 2 countries, one that is pushing them out and their own, which does not always want to reintegrate them back in.

Meanwhile in Korea, migrants are falling victim to nonpayment of wages or delayed payment of wages. In some of these cases, the factory owner has indeed gone bankrupt and cannot pay, but in other cases, employers are withholding wages in anticipation that migrants will flee Korea. In a JCMK sampling poll of only 10 migrant worker centers over 10 days, 1,222 cases were reported in which Korean employers and brokers owed migrant workers 1,101,652,561 Korean won. This figure does not count the amount owed migrants as compensation for industrial accident, and the total amount of money exacted from migrants every ten days is probably higher. Meanwhile, hate crimes (meaningless beatings of migrants with baseball bats) have begun to emerge in Ansan which is heavily populated with migrants (about 1 out of 10 migrants in Korea lives in Ansan), and employment brokers are taking advantage of the financial crisis by charging migrants \$6000 to arrange to smuggle them to Japan. In one case of broker fraud, in early February 1998 in Pusan, the Bangladeshi broker took a US\$2000 advance from each of 90 Bangladeshi undocumented workers and then instead of sending them to Japan, reported them to the police who hauled them away to detention centers to be locked up before being deported. The Korean government also fines undocumented migrants as they leave

the airport, 2,000,000 won per year they overstayed their visa.

To protest this penalty system and the Labor Ministry's dragging its feet in processing migrants' cases, about 100 migrants held a rally across from Myongdong Cathedral on Sunday, March 21, 1998. They called for the government to abolish the Penalty System (that fines undocumented migrants), to resolve cases of unpaid wages and unpai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and lastly, they protested in opposition to the new Trainee-Employment system announced on March 18, 1998.

The Korean government's two-faced policy has been to import new migrant trainees on the one hand while pushing out organized migrants with the other, to keep Korea's labor market a two-tier one.

There is no question that migrants feel the impact of the financial crisis and are leaving Korea in large numbers. The Justice Ministry estimates that some 11,000 migrant workers left Korea since 12/27/97 and local newspapers publish estimates as high as 18,000 migrant workers of an estimated 360,000-370,000 total as having left Korea. Other sources approximate the total migrant worker population as 230,000. The broad gap in these conflicting and irreconcilable estimates reflects the reality that the majority of migrant workers in Korea are undocumented. On average it is estimated that between 120-300 migrant workers are leaving Korea daily because of the financial crisis. Most work in the vulnerable small and medium-sized factories which have been going bankrupt at an average of about 150 a day.

The financial crisis has represented not only an opportunity for individual employers and brokers to pocket an extra billion won every ten days at the expense of migrant workers, it has also been the rationalization for the government to finally pass anti-worker labor laws to set off some fundamental labor market changes.

On 2/14/98,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2 "labor law reforms": one allowing "redundancy dismissal" (mass layoffs in cases of restructuring and mergers and acquisitions), and the other introducing temporary-labor facilitating manpower agencies to facilitate the displacement of regular work with irregular, contract and temporary forms of employment. The government has long been trying to institutionalize these 2 anti-worker provisions, most notably at the railroading of the labor law on December 26, 1996 that set off the General Strike of December 1996 to January 1997. However, it is only now, citing IMF conditionality for flexibilization of labor markets, that these laws' quick enactment was realized.

As if it is not enough that the IMF has imposed its all purpose for any financial crisis, one-size-fits-all economic program (Tighten your belts and open your markets) on Korea to remake the Korean economy in the US image, it has also given the government the mandate to unleash US style market tools in Korea which-unlike the US-has virtually no social safety net (analogy from Kuttner, Washington Post). Take unemployment insurance for example. Even with the new unemployment insurance programs to reform the inadequate 1995 unemployment insurance scheme, only on third to one quarter of the workforce would actually be covered by unemployment insurance.

And massive retrenchment has become the reality. Korea's unemployment stood at 2.5%, numbering 549,000 in February of 1996. As of February 27, 1997, it became 4.5% numbering 934,000. The latest Labor Ministry statistics indicate unemployment exceeding 1.65 million or 8% of the total workforce (quoted in ICFTU-APRO Labour Flash 3/20/98). As such there needs to be active retraining and reintegration of the unemployed to avoid cyclical unemployment becoming structural.

Labor ministry statistics also indicate sharp increases in number of complaints over illegal labor practices such as unfair dismissal and deferred wages: these numbered 7192 in January and 7980 in February. As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reports, "The plight of the nation's middle and poor classes, hit by the soaring consumer prices, mounting unemployment and steep wage cuts is rapidly worsening lately. In contrast, however, the cash-rich people are getting even richer, thanks to the high interest rates and various government measures to scale down inheritance taxes" (quoted in the Korea Herald 5March98). Against this backdrop, Korean workers and migrant workers are asking where are those responsible for the financial crisis and doubt whether IMF intervention will become the opportunity for fundamental reform.

## 한국 이주노동자의 현실과 노동조합과의 연대

【민주노총 조사통계부】

### 1. 한국의 경제위기와 민주노총의 투쟁

#### 1) 초국적 자본의 대변인인 IMF는 한국의 경제위기를 심화시켰다.

일본, 동남아 제 국가를 비롯한 아시아 경제 및 러시아 경제위기는 세계적인 장기불황 내지는 공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외부조건이 겹치면서 고금리-긴축, 상품, 자본시장개방, 구조조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IMF의 경제정책은 초국적 자본과 독점재벌의 이해를 일방적으로 관철시키고 한국 경제의 기반을 파탄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경제의 위기와 아시아의 전반적인 경제위기는 IMF 정책의 실패의 산물이라는 내용이 국제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IMF의 한국경제에 대한 고금리 긴축 정책은 이미 분기별 협약에서 거시적 수치들이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고 급기야 올 하반기에 경기부양정책으로 선회하기에까지 이르렀다. 이것은 IMF의 한국 경제에 대한 고금리 긴축정책이 한국에서 실패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 2) 5대 재벌과 초국적 자본 위주의 약탈적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다.

불황기에 독점화 운동은 더욱 격렬하게 진행된다. 인수합병(M&A) 열풍이 이를 증명해 준다. 이는 정부의 '재벌개혁' 천명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에서도 예외없이 관철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 한국경제에서의 독점화운동은 초국적 독점체가 가세하면서 한국경제의 대외 종속 심화라는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다.

외국자본은 '한국경제의 위기극복은 외자유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논리로 마구잡이로 개방시키고 있으며 더불어 국내의 기업, 금융기관 공공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짜기

업과 유량 금융기관들을 독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거대공통 재벌은 '5대 재벌 빅딜, 6·64대 재벌-퇴출 및 워크아웃'으로 잡혀져 있는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으로 인해 5대 재벌로 경제력이 집중되고 있는 현황이다. 이 과정에서 중하위 재벌의 대부분은 사실상 해체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5대 재벌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업종을 타 재벌에 넘기는 대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강한 업종은 타 재벌 기업을 넘겨받음으로써 수퍼 기업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기업 인수과정에서 취득세 및 양도세 삭감등의 세제지원 정책을 펴서 이를 적극 돋고 있다.

### 3) 대량실업과 소득 역전현상 확대로 노동자 민중의 빈곤화가 가속되고 있다.

위와 같은 IMF의 초긴축 고금리 정책과 초국적 자본과 5대 재벌 중심의 구조조정 정책은 대량실업을 낳았으며 이 가운데 정리해고는 노동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업이 부실경영과 정책실패의 책임이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되고 있다.

지난해 11월까지 2%대에 머물렀던 정부 통계에 의한 실업률이 9월 들어 7.3%로 늘었으며 실업자는 157만명을 넘어섰다. 민주노총에 자체 집계한 결과로는 실업률 17.0%, 실업자수 387만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곳곳의 거리에는 실직자들이 노숙자 대열에 합류하고 있어 겨울이 다가오는 것이 전 사회적으로 두려운 상황이다.

한국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98년 2/4분기 중 소득 상위계층 20%의 명목소득은 2.3% 증가했으나 하위 20%계층의 소득은 14.9%가 줄어들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소비지출은 19.7% 줄어들어 63년 조사 시작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한다.

IMF의 고금리-긴축 정책으로 고용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도 악화될대로 악화되고 있다. 임금삭감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인원축소 등으로 노동강도가 강화되고 있다.

### 4) 민주노총의 투쟁요구

민주노총은 올해 상반기 두차례의 총파업 투쟁을 벌이면서 고용안정과 경제위기의 주범인 재벌체제 해체와 IMF재협상 투쟁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민중노총의 사무총장 구속, 수석 부위원장 수배 등 10월 현재 411명이 구속, 수배를 받고 있다. 국민의 정부라는 현정부의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은 매우 심각하다.

민주노총은 하반기에 다시 한 번 6대 요구안을 작성하여 김대중 정부와 IMF에 경고를 보

냈으며, 집회와 대중투쟁 그리고 11월 말 총력 투쟁을 계획하여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고자하고 있다.

#### 〈민주노총 6대 요구안〉

1. 한국경제 파탄시킨 재벌체제 해체
2. 정경유착 부패구조 정치행정 개혁
3. 노동시간 단축으로 고용, 생활보장
4. 사회보장제도 개혁
5. 노동기본권과 민주적 노사관계 보장
6. IMF재협상으로 IMF의 부당한 개입, 간섭 중단

### 2. 한국의 경제위기 심화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더욱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초고속 경제성장을 해오던 한국은 IMF의 구제금융을 받기까지 이르렀으며 경제활동 전반에 위축현상이 발생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은 노사정이 나누어 갖자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고통의 전부를 노동자들이 전담하고 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대량 실업사태, 실질임금의 하락, 노동강도의 강화 등 고용된 노동자들의 고용조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나 고용불안과 임금체불은 비정규직 노동자나 하청노동자 일용노동자 외국인노동자에게서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들은 최근들어 환율인상으로 수입이 크게 줄어든데다 일자리마저 거의 없어 자진출국을 원하고 있고, 정부가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자진출국을 유도하고 있으나 대부분 외국인노동자들이 회사의 경영난과 부도 등으로 임금을 못 받아 출국을 못하고 있다.

#### 1) 한국의 이주노동자 현황

한국의 이주노동자는 작년까지만해도 한국 노동자 전체 2%에 해당하는 30만명에 이르렀으나 올해 이 가운데 절반에 이르는 이주노동자가 한국의 경제위기 심화로 인해 한국을 출국했다. (한국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해 4월 31일까지를 외국인노동자 자진출국기간으로 정해 벌금을 면제하고 자진출국을 유도했으나 이 기간 중 출국한 외국인노동자는 전체 불법 체류 노동자 15만 6천여 명 중 4만 6천 5백 여명이다.)

9월 말 현재 한국에서 산업연수생의 이름으로 고용된 외국인노동자는 4만 5천 여명이며 불법 체류자는 9만 4천여명으로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수는 15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 2) 실업의 고통

서울의 한 시민단체인 'YMCA 시민중계실'이 외국인노동자 2백 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외국인노동자 가운데 84.6%가 현재 취업을 한 상태인 반면 15.1%는 건강과 관계 당국의 단속, 구직난 등으로 실업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국의 9월 중 평균 실업률 7.3%보다 2배 가량 높다.

10월 국회의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올해 들어 일자리를 잃은 산업연수생은 1만 2천여명으로 작년의 2천 5백명에 비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실질임금의 삭감

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은 월 평균 64만 9천원을 벌고 있으며 이 가운데 30%인 19만 4천원을 생활비 등으로 쓰고 나머지는 고국에 송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국 노동자들의 평균임금 150만원의 43.3%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더구나 산업연수생은 고용된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이라는 이름 하에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0만원 정도를 받고 있어 실제로 외국인노동자의 평균임금은 더욱 낮은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환율과 물가인상을 고려하면 실질임금은 더욱 낮다고 볼 수 있다.

## 4) 체불임금의 심화

외노협 회원 상담소 중 전국적으로 각 상담기관을 통해 3월 중 상담 접수된 피해 건수는 모두 1,22건으로 피해액만도 11억원을 넘어서고 있다고 나타났다.

또한 10월 국회의 국정감사에 따르면 올 1월부터 6월까지 임금을 받지 못한 불법취업 외국인노동자는 모두 351명으로 체불액수는 5억 1천 1백 61만에 달했다. 이는 1인당 평균 1백 45만원에 이르는 액수이다.

이렇듯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내에서 받아야 할 체불임금이 존재하는데 정부가 무조건적으로 강제출국만을 내세우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민주노총과 외노협은 정부측에 체임 피해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자진출국 기간 연장을 건의하는 한편 체불임금 해소노력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3. 이주노동자와 노동조합과의 성공적 협력 사례, 연대, 사회적 기여수의 힘을 통해 모든 노동자들이 당면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잠재력의 극대화 사례

## 1)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관련 대응 경과

1994. 10.27 취업연수생 관련 토론회(전노대 등 공동 주최)  
11.13 노동자대회 참석(네팔노동자 20명)  
11.25 취업연수생 인권실태 개선을 위한 캠페인  
12.5-8 네팔노동자 4명 동양인력개발의 횡포를 피해 민주노총(준)에 보호요청
1995. 1.9 10:00-1.17 23:00 명동성당 농성  
1. 12 공대위 구성(출발 32개 단체, 현재 38개 단체)  
2.13 성명서 발표(정부의 외국인력정책 및 인권문제관련 종합대책에 대하여)  
2.14 안양모방 등 외국인 인권조사단 파견 (이해찬 의원 등 10여명)  
2.21 중소기업협동중앙회 포상금 제도에 대한 항의방문  
2.23 연수생 관련 노동조합 전국 간담회 개최  
3월 초 민주노총 준비위 운영위는 관련 노조의 정기적인 외국인노동자 상담의 날을 두기로 하고 관련단체 협약 체결 방침 결정  
3.25 명동성당 농성 관련 보복행위 규탄 집회 및 행진  
5.1 노동절대회, 외국인노동자 참석(100여명), 사례발표 및 문화행사  
5.8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출범  
5.9 민주노총 준비위 중앙위원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서명  
10.29 외국인노동자대회 개최 (1500여명 참석), 민주노총 산하 연맹과 각 국별 외국인노동자협의회 자매결연  
11.12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 및 본대회에 외국인노동자 참석(100여명)
1996. 1월-4월 각 자매결연 단위별 교류 프로그램 진행  
5.1 노동절 대회 참석(200여명)  
5월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서명운동  
11월 전국노동자대회 참가(100여명)
1997. 9월 '외국인 노동허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

11월	전국노동자대회 참가
1998. 4월	임금체불 및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타 개설
4월-6월	불법체류자 벌금제도 철폐와 자율귀환 보장을 위한 촉구대회 등 활동
년초	노사정위원회에서 '외국인노동자관련 제도개선문제'를 정식의제로 채택
5.1	노동절대회 참가(50여명)
9.9-11	국제민중회의 '신자유주의와 이주노동자' 워크샵

## 2) 현재 진행중인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정책

### (1) 노동조합 단체 협약 모범안 작성

민주노총은 현재 산업별 노조로 되어있지 않고 기업별 노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기업별로 외국인노동자 관련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노총은 외국인노동자관련 단체협약 모범안을 만들어 소속 노조들이 체결하게끔 하고 있다. 95년 현재, 외국인노동자 고용시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고용조건 등을 결정하게끔 되어있는 노동조합은 2개 있다.

#### 〈외국인노동자 관련 단체협약 모범안〉

제 46조[외국인노동자] ① 회사가 외국인노동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는 조합과 사전합의야 하며, 외국인노동자의 채용을 이유로 한국인노동자를 감원하거나 그 업무를 대체해 달된다.

② 회사는 불법취업이나 합법취업이거나에 관계없이 외국인노동자에게 단체 협약과 취업의 모든 규정을 동등하게 적용하고 조합 가입을 보장해야하며 국적, 인종, 고용형태 등으로 한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아니된다.

③ 회사는 현재 고용되어 있는 외국인 산업연수생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조합에 제출 수를 빙자 한 고요계약은 즉시 정식 고용계약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현지법인 연수생을 불러오는 경우에는, 그 인원, 기간, 노동조건, 연수계획 등 한 세부계획을 사전에 조합에 제출하고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조합은 외국인노동자의 고충 처리를 위해 상담을 실시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조치 이 요구하면 회사는 응해야 한다.

#### 〈외국인노동자 조합원 자격부여 관련 노동조합 현황〉

청계피복, 스위스호텔, 세미산업, 큰길, 유신설계공단, 현대해상화재, 한보, 삼화산업, 만도기계, 동아정공

### (2) '외국인 노동허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

민주노총은 지난해 9월 국회에 '외국인 노동허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 청원하였다. 이 법안은 현행 외국인력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외국인노동자의 기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허가제" 도입과 "국가 간 쌍무협정을 통한 외국인력 수급"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

### (3) 조직화 : 규약개정 (조합원 자격보장), 외국인노동자의 조직 활성화

### (4) 인권보호 활동(상담, 면담, 실태파악), 공대위 등 지역 전국 단체들과의 연대

### (5) 교육, 홍보 활동

### (6) 외국인력 정책에 대한 제도개선 투쟁

### (7) 법률적 대응

## 3) 노동조합 이주노동자와의 협력 모범 사례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특히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소속인 중소기업 "배이산업"의 경우도 92년부터 산업연수생을 고용한 케이스이다. 초반의 산업연수생들은 현지 노동자들이 임금인상 투쟁 등으로 파업을 행할 경우 현장에 대체되어 일을 했기 때문에 노동조합 활동의 걸림돌이 되었다. 또한 산업연수생 또한 현지 노동자보다 임금이 훨씬 낮았고 시간 외 수당도 책정되지 못한 산업을 현지 노동자들 보다 2배 가량 해야 하는 열악한 수준이어서 불만이 많은 상태였다.

노동조합에서는 외국인노동자문제에 대해 눈을 돌렸고 그것은 노조활동으로 이어졌다. 우선 여러 면에서 한국 노동자와 동등한 대우를 할 것을 회사 측에 요구했다. 연수 노동자들의 최대 불만은 임금문제였으므로 연수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를 해왔으며, 한국 노동법에 기준한 외국인노동자의 동등한 적용을 회사 측에 요구하였다. 노동조합이 회사 측과 교섭한 결과로 동일 임금을 적용하는데에는 실패하였지만 한국 노동자의 50%에 불과하던 연수 노동자들의 임금을 한국 노동자의 80-90% 수준으로 올려 놓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기숙사의 정상적인 제공, 퇴직금 지급, 임금체불 금지 등을 회사 측과 합의하였다.

그외에 노동조합에서는 외국인노동자의 고충처리 활동을 전개하고 노동조합 행사 시 외국인노동자와 함께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연대활동을 벌이고 있다.

산업연수생들은 1년 계약이 끝나면 교체되는 조건이므로 매년 바뀌는 산업연수생들의 노조에 대한 인식에 따라 활동상황이 달라지기도 한다. 그러나 배이산업 노동조합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언제나 열려있는 조직임을 강조한다.

#### 4) 향후 민주노총 외국인노동자 정책 방향

실업자가 정부추산 157만 명(7.3%), 민주노총 추산 387만 명(17.0%)인 한국의 현실에서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자기코가 석자라고 말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작년까지 만해도 노동조합 조직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보호 논의와 왕성한 활동이 올해 들어 많이 줄어 든 것은 그것을 반영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실업문제와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한 국가를 놓고 보았을 때 대립적인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다. 경제위기와 노동의 고용불안 문제들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세계노동을 한 눈으로 보면 세계화의 이름으로 무한 경쟁을 야기시키며 반강제적으로 값싼 노동을 바라며 이주 노동을 부추긴다. 그러나 한 국가로 집약되면 국내으 1실업문제와 이주노동자와의 차별 정책을 통해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이주노동자의 문제는 자국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는 이물질이 아닌 초국적 자본의 피해자로 소외받는 노동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현재 민주노총은 고용, 생활안정과 재벌정치 체제 개혁, 노동 3권 강화 등의 투쟁과제와 조직적 과제로서 산업별 노조를 건설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올해 상반기 고용안정과 재벌정치 체제 해체 투쟁을 벌이면서 기업별 차원의 배분투쟁과 고용 유지투쟁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인식하였다. 이에 산업별 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팀을 구성하였고 조합원들에게 산별노조에 관한 교육을 전개 중이며 운영체계와 교섭체계를 확립 중에 있다.

특히 산업별 노조건설을 매개로 외국인노동자의 문제는 그 지형이 새로이 만들어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주노동자를 한국사회의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처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우리 노동자의 일부분이라는 인식을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공유하는 작업을 산업별 노조 건설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다.

또한 민주노총에서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내용으로 외국인노동자의 노동 3권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모든 근로조건의 동일 적용을 포함시켜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를 노동조합 조직 내로 묶어내기 위한 조직적인 활동이 전개될 것이다.

#### “이주노동자와 한국경제의 위기: 노동조합의 입장” 동남아시아회의 —회의내용 요약

11월 5일

##### 환영사 및 참가자 소개

아시아 지역 각국(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폴, 태국, 베트남 등) 노동조합총연합체 대표, FES(싱가폴, 방콕), 국제산별연맹아시아지역본부(IFBWW, ICEM), ILO(노동시장정책 담당자), 태국 노조간부 등 참가

##### 1부 : 노동조합과 이주노동자 — 현실진단

(각국 이주노동자 현실, 사회인식, 노조와 이주노동자에 미치는 영향)

##### 발제1> 이주노동자 현황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 –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 1백 50만명 정부투자없이 촉진정책만 쓰고 있으며, 장기적 계획없고 즉흥적, 질 향상교육전무함, 수요와 공급의 분야가 다름

태국 - 백만명 지난 10년간 인근국가의 노동력 많이 들어오고 있음. 또한 기술력이 있는 노동력은 일본, 한국으로 나가고 부족한 노동력은 인근 국가에서 보충(노동집약적) 싱가폴 45,000 직업전문화된 노동력 수출, 노동력수출입 - 세계화 지역화

-이주노동자 시장은 복잡하고 다양함. -공급과 수요가 복잡해짐.

->노조는 새로운 문제(세계화)를 항상 의식해야 하며, 이주노동자도 노조와 긴밀한 연대감을 갖고 있어야 한다.

-초국적 자본의 이윤창출에 이주노동자들이 회생당하고 있다. 노조의 자본과 투자가 그리고 정부에 대해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동남아시아 노동자 조직률이 매우 낮다(싱가폴 3%) - 조직률을 높이는 운동을 벌여야 할 것이다.(자료 있음)

##### 발제2>이주노동자의 일반적인 조건-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공식적 이주노동자 20만명, 비공식적 숫자는 더 많을 것.

-외화(5-6년전) 획득이 최근들어 많이 줄었다. 이주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드므로 이주3년후부터 외화획득 가능 - 돌아온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막막한 상황이다.(자료있음)

#### 발제3> 이주노동자의 일반적인 조건 - 필리핀

노동력 3천59만명(64.9%)

고용 2천786만명(1.1%)

반실업 5백80만명(20.8%)

실업 2백74만명(8.9%)

-최근 들어 외화송금이 24% 줄어듬, 대만 이주노동자 중 특별한 병이 있기도 함.

-정부는 그간 이주노동자의 외화획득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음 - 자국노동자를 활용하여 경제활성화를 시켜야 할 것(자료 있음)

#### 2부 : 아시아의 경제위기 - 노동조합과 이주노동자에 미치는 영향

##### 발제1>아시아 경제위기가 이주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정책적 문제점과 연관된 최근의 경향 - ILO 방콕

-세계화로 인한 이주노동자 특히 불법체류자가 국경의 유동성과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해 늘어나고 있다. 아시아에 집중되고 있는 경제위기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종용하고 여기서 이주노동자들의 고통은 현지노동자들보다 훨씬 더 하다.

-1993년 이후 1억의 인구가 세계적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 가운데 6천3백만이 경제적 이유로 이민했으며 이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경제발전차이가 이주노동을 만든다.

##### 발제2>경제위기의 영향과 기대되는 발전은 무엇인가? - 인도네시아

-일자리 창출과 실업대책이 중요하다.

-태국의 경우 40만명이 이민을 가고 20만명이 이민을 온다.

-이주노동자들이 진정으로 경제에 도움이 되는가 - 송출에서 브로커들이 마진을 버는 문제가 생긴다.

#### 3부 : 노동조합과 이주노동자 워크샵

##### 워크샵 보고 및 토론

(각국 현황공유, 기본적인 정보의 중요성, 각국 노동조합 총연합체 정책의 중요성, 각국 노조간의 네트워크 중요, ILO등 국제기구의 역할 중요 등 조별 토론후 결론 보고)

11월 6일

#### 4부: 경제적 가격표를 넘어 — 이주노동자의 숨겨진 잠재력 모색

##### 발제1> 한국 이주노동자의 현실과 노동조합과의 연대 - 한국

한국의 이주노동자와의 연대활동 모범사례 발표, 민주노총 차원의 이주 노동자정책에 대한 경과와 이후 방향 발표(발제문 참조)

##### 발제2>이주노동자의 경제적 역할, 위기상황에서의 역할 - 태국

이주노동자의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의 문제임. 세계의 80% 이주노동자가 아시아. 문제의 조직적 해결이 중요하다.

##### 발제3> 일 국내 다국 노동자들의 연대를 통한 정치적, 경제적 권리 향상 - 싱가폴

-이주노동자문제는 국제적인 문제이다. 정부와 정부의 문제가 중요한데 일단은 한국에서 노조와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국제적 문제(정부-정부)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의문이다.

-이주노동자문제는 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해, 정보, 진실한 지식, 특별한 상황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며 국가사회경제상황에서의 복합적인 안목이 필요하다(각국 노동법, 노동시장의 동향에 대한 인지중요, 노동조합의 역할 중요하다)

-싱가폴은 기술교육을 해주는 사례가 있으며, 정부는 외국인노동자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

#### 5부 : 전진을 위한 실천적 조치 워크샵

(1단계 - 이주노동자들의 권리와 노동법 등에 관한 정보제공

2단계-각국 노동조합 네트워크 활성화, 정보교류

3단계-정부에 대한 압력,ILO 등 국제기구의 활성화

발제1> 독일금속노조의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보고

- 현재 독일의 이민노동자는 5백만명에 이른다.
- 이민노동자에게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동일근로조건, 투표권 부여함
- 콜정부가 들어서면서 큰변화가 생겼음. - 이주노동자는 8년후 시민권 획득이 가능(자식은 5년후, 독일인과 결혼하면 3년후)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함.
- 1962년 외국인 노동자 담당부서 생김. 1976년 외국인 노동자 시체 담당부서 생김. 1984년 외국인노동자 COMMITTEE로 승격
- 전국노동조합총연합단체의 9%가 이주노동자이고 독일금속노조의 11%가 이주노동자임.  
(독일인의 조직율은 55%이며 이주노동자의 조직율은 57%임)
- 현재 선출된 노동조합 간부 가운데 이주노동자가 3-4%이고 10%를 목표로 하고 있음
- 2천년까지 외국인 개발 교육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다.
- 독일은 5년내에 8-10여개의 큰 노조로 병합되고 있는 추세이다.
- 보수적인 사람은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이주노동자의 등등한 대우는 자국 노동자의 고용에 불안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반대하고 있으나 등등하게 대해주어야만 사회의 안정에 기여하게 되고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발제2>IFBWW노조의 모범 보고

- IFBWW(International Federation of Building and Wood Workers)
- 노동조합간의 연결이 중요하며, 이주를 보내는 노동조합에서는 출발전에 조직화하고 정 보제공동을 시행하며, 이주를 받는 노동조합은 교육등을 통해 조직화를 시행한다.
  - 정보교류, 캠페인과 국제적동의를 통해 노조를 현대화시키는 작업 진행한다.(자료있음)

결의문 채택

〈결의문〉

“이주노동자와 아시아의 경제위기: 노동조합의 입장”

동남아시아 지역회의 참가자의 결론

(에버트재단: 노동자료센타 주관, 태국방콕, 1998년 11월 5-6일)

우리는,

동남아시아 이주노동자의 증가현상을 인정하면서 그것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세계화의 구조적인 부분임을 인식하고 있다.

최근 아시아의 경제위기는 동남아시아의 이주노동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이 위기는 이주노동자들 특히 여성과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권리에 악이용 되고있고 그 고통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능하면 자국 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협력의 토대를 제안한다.

1.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조합의 정책과 조합원들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창출, 전개한다.
2. 노동조합은 이주노동자들을 상대로 권리와 노동조합 교육을 활발히 하도록 한다.
3. 노동조합은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이것이 가능하도록 법제도를 개정하도록 한다.
4. 아시아 지역 노동조합은 이주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한 정보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5. 각 국 총연합 단위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한다.

◎노동과 이주노동자에 관련된 현행법과 규제에 대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실행

-현행 적절한 법적도구에 기초한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

-지역 내 활동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단체 간의 관계강화

-이주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법률지원 개발

-노조와 이주노동자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대화와 교류의 창출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3자 구조의 활용

6. 노동조합은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복지를 기존의 또는 관련 ILO협약과 유사한 국제협약에 준하도록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정부 또는 사회활동을 하도록 한다.

7. 노동조합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 구성원의 권리보호를 위한 UN국제협약과 같은 국제적 제도를 만들기 위해 국제적 캠페인에 참가한다.

8. 각 국 또는 지역 단위의 노동조합은 이주노동자 단체와 정보교류, 대화, 교환방문, 회의 등을 통해 정기적 교류를 해나간다.

9. 에버트 재단은 참가자들이 상황을 재평가할 수 있도록 이번 회의와 같은 회의를 다시 소집한다.

## APPA보고서

□ 제 목 : 제 4차 아시아 태평양 민중회의

Asia-Pacific People's Assembly

□ 기 간 : 1998년 11월 7일~15일, 말레이시아의 콜라룸푸르

□ 보고자 : 정윤식, 부산 외국인 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편집실장

### 1. APPA 회의에 관하여.

APPA는 Asia-Pacific People's Assembly의 약자로서, 아시아 태평양 민중회의라고 번역한다. 이 회의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APEC) 회의와 때를 맞추어서, 같은 지역의 민중들을 대표하는 각 단체와 개인 활동가들이 민중적 관점에서 해결책을 강구하는 회의이다. 이번 회의 또한 11월 14일에서 18일간 열렸던 APEC 회의에 앞서서 열렸다. 이번 APPA 전체의 주제는 '세계화에 맞선 민중들의 권리 주장'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청년, 여성, 교육, 원주민, 인권과 민주주의, 민영화와 재정 규제, 노동, 환경과 산, 이주 노동자, 토지와 농업, 미·일간 군사 의제, 도시 빈민, 공동체 살림 등의 주제를 놓고 각각 별도의 포럼을 가졌다.

각각의 포럼들에게 도출된 결의안은 13일과 14일, 전체 회의를 통하여 모아졌다.

이 회의에는 최소한 30개국, 316개의 조직을 대표하는 640명이 참가했다. (이 수치는 최종 선언문에 기록된 것임)

### 2. 개회식 (11월 10일)

개회식은 대회의 사무국이 있는 페더럴 호텔에서 열렸다. 개최국을 대표하여, 말레이시아의 이주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를 위하여 일하는 단체인 테나가니타의 아이린 페르난데즈와, 시에드 알 리가 환영사를 했고, 이어서 이갑용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각국을 대표하는 참가자들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오후에는 멕시코 출신의 알렌드로 빌라마르 칼데론 교수가 각종 도표와 통계를 보여 주며, 남미, 특히 멕시코가 아이엠에프의 구제금융을 받은 이후 민중생활이 어떻게 악화되

었는지 설명했다. 90년대 들어서서 남미 국가들 중 단지 2개국만 무역에서 흑자를 봤다. 그러나 그 나라들도 석유를 생산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경제의 외형은 크게 성장했지만,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되었다. 더 많은 부가 더 소수에게 집중되고, 외국으로의 유출 또한 가속화되는 것이다. 멕시코의 세계화-IMF의 간섭을 받음으로 인해서 얻은는 결국, 실업과 빈곤을 심화시켰고, 민중들의 생활만 어렵게 만든 것이다.

다음은 테나가니타를 대표하는 아이린 페르난데즈의 인사말 요약이다. 특히 다음 글귀에서 보이는, '단결한 민중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 People united never be defeated'라는 말은 이 행사 내내 쓰였던 구호였다.

'세계화에 대한 우리의 저항은 낯설지 않다. 우리는 이미 식민주의에 대항해 싸워서 이겼고, 또한 제국주의와의 투쟁도 했다. 이제는 세계은행과 IMF로 대표되는 세계화라는 새로운 상황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그들은 무역을 자유화 해서, 민중과 땅과 우리의 재산을 뺏아 갔다. 최근 삼십년간 국제 투기 자본은 고도화된 기술을 이용하여 자본을 생산 보다는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투기의 수단으로 사용했고, 이제 그들은 그러한 일에 대한 장애를 없애기 위해서 WTO를 만들었다. 이같은 카지노 경제의 변방에 있는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은 패해를 벗어날 수 없게 되었는데, 아주 노동자들은 강제적으로 추방되었고, 공동체는 파괴되었으며, 식량은 고갈 상태로 치닫게 되었다. 군비는 증강되었고, 세계화에 대한 일체의 저항은 탄압과 폭력의 대상이 되었다. 범지구적인 자본은 단일화되었고, 그들은 APEC과 같은 국제적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자유화와 지구화, 이것을 간단히 말하자면 반민중적이라는 것이다.'

민중들은 요즘처럼 심각하게 피폐된 적은 없다. 그들은 임시노동자를 고용하여 노동권을 짓밟고 있고, 자원과 물의 사유화로 인하여 자연 자원의 파괴, 식량난을 야기시키고 있다. 우리가 즉각 저항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내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APPA에서, 전 민중들을 대표하는 이곳에서 자유와 평화와 존엄성이 보장되는 세상을 위하여 우리의 권리를 드높이고 지구화에 저항하기 위해 모였다. 저항을 시작했다는 것은 이미 승리를 얻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여러분과 단결했다는 것은 민중의 승리에 대한 희망이 싹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결한 민중은 결코 패배하지 않으므로.'

### 3. 아주 노동자 포럼

이주노동자 포럼은 스텐포드 호텔에서 열렸다. 주행사장인 페더럴 호텔에서 택시로 20분 정도 가야 하는 거리이다. 이 포럼은 11월 11일과 12일, 양일간 열렸는데, 전체의 주

제는 '세계화된 경제에서 아주 노동자의 권리 주장'이었다.

#### 1> 주제발제

11일 오전에는 '세계화에 대한 아주 노동자의 도전과 응전의 경험'이라는 주제로 네 사람이 발표했다. 발표자들은 다음과 같다.

Tati Krisnawaty - Solidaritas Perempuan, Indonesia

Joachim Victor - CCDB, Bangladesh

Imelda Laguindam - Migrante

Rex Varona - MAC -Hongkong

이 발표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조아킴 빅터가 발표한 방글라데시의 사례였다.

그는 최근에 귀국한 방글라데시인 노동자 200명과 인터뷰를 했다고 했는데, 말레이시아의 불법체류자 수용소에서의 비인도적인 처우에 대하여 고발했다. 그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는 그들을 체포할 때 각종 폭행을 저지른 것은 물론이고, 수용소에서의 처우도 형편없다는 것이다. 약 500명의 수용자에 대하여 20명만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구비했으며, 수도시설을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도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은 임시로 가설된 숙소에서 지내는데, 이 수용기간에도 폭력이 다반사로 이뤄진다고 했다. 성적인 모욕도 가해지는데, 다중이 모인 앞에서 성기를 노출하게끔 한다고 했다.

인도네시아를 대표한 파띠는 자국의 인력수출 관행을 비판했다. 100만에 이르는 인도네시아인들이 외국에서 일하는데, 인도네시아 정부는 그들이 벌어오는 돈에만 관심이 있지, 그들이 타국에서 처한 상황에는 전혀 무관심이라고 했다. 실제로 수많은 인도네시아 여성들이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타국에서 가정부로 일하면서,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콩 AMC에서 온 렉스 바로나는 아주 노동자들의 단결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세계화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면에서의 단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같은 계급, 지역, 정치적 관계에서의 연대 → 다른 분야와의 교류와 단결 → 민중 수준에서의 공동체 건설, 각각의 공동체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연결된다 → 같은 지역에서의 공동체 회복 (지구화는 고립된 공동체에 먼저 영향을 미치므로, 같은 지역에서의 민중 - 여성, 노동자, 농민 공동체가 단결해야 한다) → 경제적 생산을 이 단결된 공동체를 통하여 회복

그는 우리가 신자유주의와 싸워야 한다면, 단순히 정치적인 투쟁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활을 위하여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 생산적인 공동체를 건설하는데서 이주 노동자들은 새로운 사회 구조를 만드는데 독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 지었다.

## 2> 분반토론

오후에는 각 참가자들이 3개 분과로 나뉘어 토론을 벌였다. 3개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1.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가해지는 권리의 위기
2. 지구화와,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의 가치
3. 이주 노동자의 권한 강화를 통한 세계화에 대한 저항

다음은 제 3주제에서의 발제 내용이다.

### (1) Bien Molina, AMC

AMC는 이주 노동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재통합을 위한 교육, 이주 노동자 운동을 위한 조력, 이주 노동자들의 발전을 위한 코스 운영, 이주 노동자들의 가치를 위한 코스 운영.

이주 노동자들은 사회정치적, 또는 사회 경제적 활동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한다.

정치적 활동들 가운데는, IMF, 세계은행, WTO와 같은 기구들이 이주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육도 있다.

경제적 활동 가운데는 집단 저축을 통한 경제적 힘의 증강, 이주 노동자 가족의 결합 프로그램 등이 있다.

### (2) Saiful Haq, 방글라데시, WARBE (방글라데시 귀환 노동자 복지 협회)

귀환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전세계적인 협조를 통한 이주 노동자 조직의 지원.
2. 다카에 각각 다른 지역에서 귀환한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이주노동자센터의 설립.
3. 12월 18일을 이주 노동자 연대의 날로 선언할 것.
4. 아시아 모든 나라의 비정부 조직과 이주 노동자 조직이 참가하는 아시아 이주 노동자 포럼의 설립.
5. SARC (South Asian Regional Cooperation - 남아시아 지역 협의체)에 속한 모든 나라의 정부 조직과 이주 노동자 조직의 협의체 건설

### (3) 정윤식, 한국, 외노협

이주 노동자의 권한 강화를 통해서 세계화에 대하여 저항한다는 것은 모순되는 면이 있다. 이주 노동자 스스로가 세계화의 수혜자이기 때문이다. 만일 세계화가 되지 않았으면 그들은 타국에서 일할 기회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권한 강화는 한계를 지닌다. 만일 그들이 결국 내국인과 똑같은 권한을 가지게 된다면 수입국에서는 더 이상 외국인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진다.

한국에서는 올해 IMOK이라는, 외국인 노동자의 차치 조직이 생겼으나 성공적이지는 않았다. 그들의 행위가 한국 시민사회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외국인들 스스로의 조직도 중요하지만, 해당국가에서의 지지가 없이는 권리획득이 쉽지 않다. 그리고, 송출국이나 송입국을 떠나서 그 국가가 민주화되고 문명화되지 않으면 이주 노동자의 권리 신장은 기대할 수 없다. 물론 한국도 이주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송출국 또한 이러한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들은 한국에 오기 위해서 4,000~8,000 달러를 지불한다. 어떤 나라에서는 평생을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돈이다. 어째서 송입국의 비인간적인 관행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자국의 비리에 대해서는 고칠려고 하지 않나? 사실, 이런 자리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비인도적인 처우를 나열하는 것은 지겹다. 그보다는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외노협을 비롯한 한국의 상담소들은 부족하나마 그동안 성과들을 이뤄냈다. 최근에는 불법체류자들도 한국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되었다. 한국의 실무자들은 이주노동자들 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에서 일한다. 그러나, 이런 희생적인 봉사가 세계인민의 평등에 공헌했을까? 그들은 송출국에서 대부분 부유하거나 중산층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들이 귀환해서도 소비, 향락 산업에 종사하거나, 일부는 오히려 브로커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단순히 도와주기만 하는 사업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따라서 외노협은 앞으로 그들의 귀환에 대비한 교육, 경제적 자립책 마련, 국제적인 이주 노동자 네트워크 건설에 나설 것이다.

물론 동일한 국적의 이주 노동자, 혹은 동일한 국가에서 일하는 다양한 국적의 이주 노동자 조직은 중요하다. 먼저 이 조직부터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국적을 넘어서, 같은 계급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자본가들이 WTO를 만들면 우리도 똑같은 대옹기구를 만들어서 최소한의 조건을 그들의 무역관행에 반영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위의 분반 토론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a. 모순점

- \* 이주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저임금과 임시적 고용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해서 그들은 의존적이다.
- \* 그들의 불평등한 이유로 인해서 국제적인 노동거래가 이뤄진다.
- \* 그들은 실제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자국민에 비해서 수입이 높음으로 인해서 자본가적 의식이 더 강하다.

#### b. 세계화에 대한 저항

- \* WTO, 세계은행, IMF, 초국적기업에 대해서 저항. 그들은 생산, 무역, 투자, 노동, 시장 등을 통합하려 한다.
- \* 12월 18일, 이주 노동자 단결의 날을 기하여 이주 노동자 관련 유엔법안의 비준을 위하여 노력하자.

#### c. 조직화

- \* 다음과 같은 조직을 만든다.  
노조, 협회, 집단 저축,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연계, 건강을 위한 조직, 민주화를 위한 조직.
- \* 다음을 교육한다.  
세계화의 가공할 힘, 이주 노동자는 어떻게 세계화에 희생되는가, 귀환을 대비한 경제교육,
- \* 연대  
노동자와 자본가의 근본적 차이에 집중한다.  
이주 노동자와 현지 노동자, 이주 노동자와 현지의 다른 부문과의 연대  
송출국과 송입국의 연대를 통한 세계화에 대한 저항  
국제적인 로비

#### d. 목표

- 미등록 노동자에 대한 합법화.
- 이주 노동자를 공식 노동 구조에 편입시키는 것 (이것은 노동기본권 보장, 단체 협상력의 부여 등을 통해서 이뤄진다).
- 경제적으로 본국에 재통합 되는 것.

현지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와의 평등화.

기본적으로 협동으로, 동등하게, 공평하게, 인간 중심적인 발전과 결정이 이뤄지도록 한다.

민중의 힘에 기초한 민주적 개혁에 기여.

이날 토론 중에는 앞에 본인이 한 발제에 대한 몇 가지 지적 혹은 논쟁이 있었다. 홍콩 AMC에서 온 비엔은, '이 자리에서 비인도적 사례를 폭로하는 것에 염증을 느낀다'라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표했다. 그러나 다수의 - 주로 송출국 출신이다 - 참가들은 이런 자리에서 그런 것을 논의하지 않으면 어찌겠냐고 했다.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이 대부분 중산층 출신이기 때문에 인류 평등화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대에서는, 필리핀 출신의 한 수녀가 지적했다.

'물론 인도에서 거제도 없이 길에서 잠을 청하는 사람들이 이런 기회를 가진다면 좋은 일이다. 그러나 이주 노동자 문제는 그런 빈곤 타파보다는 본질적으로 노동력의 공급과 수요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 4> 총화토론 보고

먼저 가족에 대해서는 구성원이 장기간 격리됨으로써 야기되는 문제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연락망 구성 등 재조직 프로그램이 절실히다. 그리고, 특히 여성 노동자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가정부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은 훌어져 있어서 조직화가 어렵다. 특히 비공식 부문, 섹스 시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가장 나쁜 환경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 자체가 힘든 실정이다.

이날 오후, 선언문을 기초하고, 기자회견을 한 뒤 이주 노동자 포럼은 마쳤다.

#### 4. 실천 행동

APPA 전체 참가자들의 시위는 두 번 있었다.

\* 11월 12일 오후 6시 경, 200여명의 참가자들은 인도네시아 대사관 앞에 모였다. 동티모르 학살 사건의 7주년이었던 것이다. 참가자들은 인도네시아에 항의하고, 특히 인도네시아의 민주화를 촉구했다.

\* 11월 15일 오전 11시 경, 300여명의 참가자들이 쿠알라룸푸르에 소재한 세계 최고의 빌딩인 KLCC에 모여서 세계화에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 각국을 대표하는 연사들의 연

설이 끝난 뒤, 'junk apec', 'people united will never be defeated'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했다.

\* 11월 12일 오후 5시 경, 40여명의 이주 노동자 포럼 참가자들의 집회가 KLCC에서 있었다. 참가자들은 이 건물의 로비에 현화하고, 다음과 같은 쪽지를 바쳤다.

'우리는 이 말레이시아의 피라미드를 짓다가 죽어간 이주 노동자들을 기억합니다.'

이 건물은 한국의 쌍용건설이 지은 건물이다. 이곳에서는 말레이시아의 자랑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주 노동자 운동가들에게는, 아시아 각국의 이주 노동자들이 와서 죽어간 곳으로 기억되고 있었다.

## 5. 참가 준비

외노협 차원에서 준비해 간 것은 약간의 홍보물 정도였으나 다른 참가 국의 단체들은 자신들의 이슈를 알리기 위한 홍보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외노협은 외노협 소개와 한국 내 상담단체 주소가 수록된 브로셔, 아시안 워커스 뉴스(이주노동자용 영자신문) 11월 1 일자, 한국 상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배포했을 뿐이다.

한국상황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의 이주 노동자 현황, 최근 실태 등이 실려있다.

# 이주 노동자 포럼 선언문

(1998. 11. 10)

우리는 제 4회 국제 이주 노동자 포럼에 참여하여 '세계화된 경제에서 이주 노동자들의 권리 주장'이라는 주제로 토론했다. 우리는 신자유화의 물결을 탄 세계화의 위기는 기본적인 생존을 계속 위협하고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면서, 삶의 질을 손상시킨다는 것을 확인했다. 우리는 서로 힘을 합쳐서 사회, 경제적 정의를 위한 공동의 투쟁을 하기로 했다.

(1995, 96, 97년의 결의를 재확인한 부분, 생략)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아시아 경제에 미중유의 붕괴상을 불러왔다. 그것은 세계의 여러 부문에도 역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늘날 아시아에서, 우리가 직면한 것 들이다.

1.

역사적 수준에 따른 실업문제 : 아시아의 7개국(남아시아와 중국은 제외)에서는 2600만 명이 이미 실직했고, 400만명이 1998년 말까지 실업을 앞두고 있으며, 100만명의 이주 노동자들은 올해 추방을 앞두고 있다.

2.

엄청난 빈곤화 : 위기로 인해 초래된 가난의 확대는 아시아와 같은 지역의 식량난을 증가시켰다. 일부 아시아 지역 국가의 정부는 이 위기가 생활의 기준을 20년 이전으로 후퇴시켰다고 지적한다. 사회적 불평등 역시 심화되었다. 직접적인 효과를 하나 들자면, 도농간에, 그리고 국제적인 노동력 이주가 촉진되었다는 것이다. 위기는 사회적 구성원들에게 각각 다른 충격을 주었다. 이 위기로 가장 피해를 본 계급은 농민, 노동자, 이주자, 여성, 토착민과 소외받은 자들이다.

3.

경제적 왜곡과 구조적 결합의 심화 : 빈곤의 와중에도 상품, 특히 수출품의 과잉생산 위기가 있다. 지구적 기업 자본은 모험 자본을 통해서 전략 산업을 조정하여 이 위기를 활용해 왔다. (통신, 전력, 운송, 금융 등의 부문)

4.

사회적 긴장의 고조 : 종족간의 분쟁들은 민족 폭동을 일으켰다. 여성과 남성, 이주 노동자와 현지 노동자, 종교 집단간의 긴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

#### 5.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의 격화 : 이주 노동자들의 권리가 침해하는 사례들 예컨데 더욱 엄격하고, 이주민들을 더욱 차별하는 법률과 정책, 급료와 수당의 삭감을 특히 이주 노동자에게 적용하기, 이주 노동자들을 3D 직종 (더럽고, 위험하고, 저급한 일)에 배치하는 사례들이 명확히 증가하고 있다. 이주 노동자들은 현지 노동자들의 직업 도둑으로, 질병의 전파자로, 범죄를 증가시키는 주범으로, 경제난을 일으킨 희생양으로 취급받는다.

#### 6.

범지구적인 노동력의 상품화 : 인간 노동의 무역은 착취적이기는 하지만, 이제 세계에서 가장 이윤이 남는 산업이 되었다. 독점자본들의 확장일로의 경쟁은 값싸고 통제 가능한 노동력을 먹고 자란다.

민중의 저항은 이 파괴적 현상을 곧바로 정지시켜야 한다.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로 인한 광범위한 고통과 위기는 민중들을 지구화에 저항하는 투쟁을 추동한다.

## 도전

이주 노동자 그룹과 그 옹호자, 비정부 기구들은 스스로 다음과 같은 행동을 결정한다.

1. 지구화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정부들, 노동력 무역업자들, 국제적인 금융, 기업체들에게 지속적으로 부여.
2.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단위에서 저항을 위한 우리들 역량의 보충과 재충전을 발전 시킴.
3. 이주 노동자의 인권을 고발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투쟁
4. 이주 노동자들이 스스로 세계화에 대항할 수 있도록, 이주 노동자가 주체적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 조직을 강화
5. 선택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모델과, 세계화에 대항하며 교체 가능한 과정과 실천의 창조

6. 동맹의 확대와 강화, 계급간, 부문간, 국적간의 연대.

7. 세계화에 대항하는 대중적이고 정치적인 운동을 건설하고 강화하기 위한 주도적 협조의 개시.

8. 선택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모델과 체계를 촉진할 수 있는 생활습관과 교류를 개발.

1998년 이주 노동자 포럼은 다음과 같이 공히 행동할 것을 결정한다.

## 구체적인 행동

1. UN 협정의 비준과 실천을 위한 캠페인
2. 이주 노동자의 추방에 관한 감시
3. 비공식적 부문(매춘 노동자, 연예인, 가사 노동자)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에 대한 증가하는 반 인권적인 폭행에 대한 지역적 상담의 촉진
4. 남아시아 지역 협력 협의체 (SAARC)의 지역적 협의체 구성을 위한 사전 작업
5. 이주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에 반하는 캠페인, 홍콩의 임금삭감에 반대하는 캠페인에 공공의 지지를 추동
6. 12월 18일의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과 함께하는 국제 연대의 날을 조직하고 홍보함.
7. 출발전과 도착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확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공동체 개발.

## 기업 행동 강령

### 1. 기업행동강령의 취지

- 기본적인 인권의 존중
- 현지문화와 관습에 대한 이해와 존중
- 현지법과 ILO규정에 의거, 국제적으로 합의된 노동권의 준수
- OECD 가입이 의미하는 선진국으로서의 선진적이 노사관계의 실현
- 현지화를 위한 노력

### 2 세부내용

-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한다: 노동자들에게 폭언이나 육체적인 폭행, 몸수색을 하지 않으며 성적인 모욕이나 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아동노동을 사용하지 않는다: 현지국가의 법률이 규정하는 아동노동 제한규정을 준수하며 최소한 15세 이하의 아동들을 노동시키지 않도록 한다. 15세를 초과하는 청소년들을 고용할 경우에도 적절한 학교교육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한다.
-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월 1회의 생리휴가와 최소 2개월의 출산휴가, 출산후 재취업을 보장한다.
- 현지국가의 법률과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권을 보장한다: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며 노동조합의 제반활동을 방해하지 않는다.  
노동조합 결성이나 단체교섭을 이유로 기업철수, 공장이전, 폐쇄, 배치전환 등을 하지 않는다. 노동조합활동가를 탄압하기위한 부당 노동행위를 하거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지 않는다.

- 현지법규에 따라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의 대표에게 기업에 대한 성과를 진실하게 공개한다.

- 성이나 인종, 종교, 문화적 관습을 이유로 채용과 급여, 인사관리상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공정한 임금을 지급한다: 현지국가가 규정한 법정최저임금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합의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현지국가의 동종 기업들이 지급하고 있는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

- 적절한 노동시간을 유지한다: 하루 8시간의 정규노동과 주1회의 휴가를 보장하며 현지 국가의 법률이 요구하는 노동시간 규정을 준수한다. 초과노동을 노동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주당 초과노동과 휴일노동에 대해 현지국가의 법규가 규정하는 수준 이상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현지국가가 요구하는 노동기준과 사회복지, 조세관련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정경유착이나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산업보건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무와 책임을 준수한다: 현지국가의 법규에 따라 위험한 작업환경을 개선하며 산업재해와 직업병이 발생할 경우 현지법규에 따라 보상하며 노동자가 원하는 직무로 배치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작업장과 기숙사에는 제반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위급 시의 대피로를 확보하도록 한다. 기숙사는 적정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식사를 제공할 경우에는 적절한 영양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한다.

- 환경보호와 공해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현지국가의 법규의 법규에 따라 공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도록 하며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 노동자들이 현지국가의 노동관련 법규와 기업의 관련규정, 기업행동강령을 알 수 있도록 작업장에 공지한다.

- 집단해고를 동반하는 기업 이전이나 사업구조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노동자들과 사전에 충실히 협의를 거쳐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도록 한다.

- 적절한 직업교육 및 훈련기회를 제공하고 기술이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현지국가의 법규가 요구하는 교육훈련 의무를 준수한다. 노동자들의 노동능력 향상을 위해 적절한 교육훈련을 제공하며 기술이전을 통해 현지국가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 현지법인이 국내 모기업에 연수생을 파견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교육훈련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며 저임금노동을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한다.

- 현지화를 위해 노력한다. 본국에서 파견된 기업의 대표자와 관리자들에게 현지언어, 현지의 법규, 문화와 관습에 대한교육을 실시한다. 관리가 현지인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며 외국기업이 아니라 현지국가의 기업으로서 재투자를 통해 현지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

- 국내의 시설을 이전하여 진출하는 경우 국내의 고용안정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한다. 집단해고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과 성실히 협의하여 적절한 보상과 전직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한다.

-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자들로 구성된 해외진출기업감시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협조한다.

#### 회의보고

### **이주노동자 권리옹호 캠페인과 대안적 저축에 관한 아시아협의회 Roots and Rights Campaign and Regional Consultation on Migrants' Savings for Alternative Investment(MS-AI)**

일 시: 1998년 12월 16일 - 20일

장 소: 아테네오 드 마닐라 대학교, 마닐라, 필리핀

Ateneo de Manila University, Manila, Philippines

주 최: Asian Migrant Centre/

Unlad-Kabayan Migrant Services Foundation/  
Kalungan Center Foundation. Inc./

Kapisanang Mga Kamag-anakan ng Migranteng  
Pilipino(KAKAMPI)/

보고자: 김현숙, 김미선

#### **1. 회의 개괄 및 특징**

이번 회의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먼저 처음 이를간은 올해 두 번째로 지키는 이주노동자 국제연대일에 초점을 맞춰 이주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근본적인 조명과 캠페인 그리고 각국 대사관 방문 및 외무부 방문으로 이루어졌고, 다음 이를간은 이주노동자들의 대안적 투자를 위한 저축모임에 관한 아시아지역 협의회로 진행되었다.

이 회의는 기존의 이주노동자 관련 회의와 다르게 참석자의 절반 정도가 실제 대안적 저축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대부분 가사노동자)이어서 이들의 경험과 전망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

매일의 회의진행 윤곽을 보자면,

17일 첫날은 참석자들의 회의에 대한 기대를 확인함으로 시작하여, 아시아경제위기와 이주민에 대한 전망에 관해 필리핀대학 교수의 강연이 있었고, 각국별 보고(이주민연보를 기초로 한 나라별 업데이트 위주), 웍샵과 대사관 방문 준비 등으로 이루어졌다. 각국 보고 시간에 김미선 씨가 경제위기 이후의 한국내 이주노동자 상황과 정부의 국내 노동력 수출계획 등 정책변화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

18일 둘째날은 미리 정해진 대로 참석자들은 7개의 조로 나뉘어 각각 호주, 방글라데시, 벨기에, 캐나다, 인도네시아, 멕시코, 스페인 등의 대사관을 방문하여 이번 회의의 의의 및 방문목적을 설명하고 유엔 이주민 조약에 대한 비준을 건의하였다. 오후에는 외무부를 방문하여 해외에 나가있는 필리핀 노동자의 자녀들이 크리스마스 캐리를 불렀으며, 밖에서 계속하여 집회를 하는 동안 8명의 대표가 외무부 관계자들을 만나 해외취업자들에 대한 서비스나 정책개선 등의 의견을 전달하였다.

19일은 귀환 프로그램에 관한 개관을 AMC로부터 들었고, 귀환 프로그램에 대한 각국의 노력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발표시간에 김현숙 씨가 한국내 이주노동자들의 특수상황과 갈릴레아에서 시도한 귀환프로그램에 관한 사례를 보고하였다. 이어 웍샵 두 번째로 귀환 프로그램에 관한 주요점과 공동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였다.

20일은 오전에 필리핀 외무부 관계자와 필리핀해외취업부(Philipine Overseas Employment Administraion, POEA) 담당자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주노동자들은 이 시간을 빌어 해외에 있는 필리핀 노동자들이 정부에 내야 하는 각종 비용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하였고 그리고 영사관의 24시간 업무 및 서비스를 요구하였다. 해외 참가단체들은 또한 국내 및 해외 송출업체의 과다한 비용문제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였다.

대안적 투자를 위한 저축에 이미 참가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다른 이주노동자들이 더욱 많이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했으며, 대부분의 노동력 수입국인 한국, 대만, 일본의 참가자들은 각국의 상황과 조건을 비교하였으며, 일본의 사례를 통해 자국 내에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 이 프로그램을 진행해보기로 하였다. 참가자들은 이 귀향 프로그램이 이주노동자 자신들로부터 시작하여 이주노동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새로운 '운동'이 될 것을 확신하는 한편, 각자의 실천과 결과물들을 검토하고 나누는 모임을 다가오는 2000년 다시 한 번 갖기로 하였다.

## 2. 귀향 프로그램 개관 및 현황

2-1. 귀향프로그램은 이주노동자 문제에 응답해온 프로그램과 서비스 가운데 가장 최근의 것으로, 계속해서 개발, 발전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우선 이주노동자 자신들의 측면에서 보자면, 이주민이 된다는 것 자체가 곧 문제의 표현이므로 이에 대한 대안을 스스로 마련하겠다는 것이야말로 이주노동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귀향 프로그램의 기본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주노동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 즉 그들의 수입에 대한 자기 결정과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귀향은 이주노동자들이 언젠가는 자기가 떠나온 가정과 사회로 돌아갈 것을 전제로 시작되므로, 돌아간 후의 상황에 대한 예측 또한 전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동안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이주노동자들의 귀향 이후에도 여전히 본국의 실업과 임금격차 문제는 남아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귀향프로그램은 해외에 나가서 일하는 동안 자신의 수입을 최대한 계획적으로 저축, 본국 생계프로그램에 투자하여 본국의 고용창출은 물론, 소규모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귀향프로그램은 경제적 측면에서 이주노동자들의 가정과 사회로의 재정착을 돋는 것과 함께 의식의 전환을 동반하여 더 이상 착취적인 이주노동이 강요되지 않도록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까지가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귀향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기본요소들로는 1) 이주노동자들의 저축, 2) 투자와 사업설립, 3) 고용국과 본국의 그룹들과의 연결, 4) 교육, 훈련, 조직 등이 있다. 이를 단계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고, 각 단계는 또한 서로 맞물려 있다.

가. 이주노동자의 본국으로의 귀환에 대한 계획과 기초 마련 - 팀웍을 바탕으로 한 저축과 대안적 투자

나. 본국에서 가능한 대안적인 수입과 생계에 대한 접근, 창출 - 소규모 생계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다. 교육과 조직을 통하여 이상의 과정을 이주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강화시키는 것

라. 가치의 전환과 이주노동자와 가족 그리고 사회간에 새로운 형태의 관계 형성

마. 착취와 억압적인 이주노동의 과정에 대한 도전

## 2-2. 아시아 내 이주노동자 귀환 프로그램 진행 현황

### 1) 홍콩

가. 필리핀 그룹: 현재 교육중인 그룹이 계속 생겨나고 있으며 다음의 6개 그룹은 저축과 투자를 수행하고 있는 그룹들.(팔호 안은 조직연도) 투자는 필리핀의 Unlad Kabayan이라는 단체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DAMA(1994), HKFSA(1998), BBHK(1996), UGMAD(1998), FOWSA(1996), SHADE

나. 인도네시아 그룹(1995) : 현재 20명 회원, 매월 일인당 홍콩달러 100불씩 저축.

다. 타이그룹Thai Women Association(1995) 현재 16명 회원, 저축액수 70,000 홍콩달러

다. FEONA(Far East Overseas Nepalese Association): 아직껏 저축활동은 없으며, 현재까지 상담, 언어교육, 기술교실, 권리에 대한 교육과 지원 역할에 한정.

이상의 홍콩내 다양한 민족별 그룹들은 필리핀을 제외하고는 투자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각국내의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이 필리핀만큼 발달되어 있지 않으며, 또는 있다해도 귀향 프로그램을 전담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

### 2) 대만

문제점: 합법취업자의 경우 - 1년 후 재취업가능성 보장 못함. 세금, 강제저축으로 인한 소액저축 - 근본적으로 저축 불가능. 최장 3년 체류이기 때문에 저축할 만큼 충분히 고용기간이 길지 않음.

불법취업자의 경우 - 저축할 수 있으나, 은행구좌 열 수 없고, 안전망없음.

### 3) 일본

1996년에 이주노동자들의 포부와 미래에 대한 세미나를 통해 귀향프로그램 시작. 직접 경험과 참여를 얻기 위해 일본내 지원단체 Solidarity Centre 직원들 중심으로 핵심그룹 형성하여 저축모임 시작함. 현재 10개의 저축 그룹이 있고, 가치형성을 위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2그룹이 필리핀에 투자하고 있다. 일본인들과 이주노동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 4) 태국

문제들: 출국전의 상황 - 막대한 빚으로 인해 저축 곤란하게 만듬. 태국내 몇 안되는 그룹이 귀환한 태국이주노동자를 도움. 이주노동자 정보센터 설립추진 중. 태국내 민간

단체들은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 이슈를 다루어야 하며, 직업훈련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 5) 필리핀

가. ATIKA: 홍콩, 싱가폴 등에서 돌아온 57가정을 돌보고 있음. 자녀들의 가치형성을 돋는 교육, 네트워크, 가족지원 프로그램 실시 등.

나. KAKAMPI: 이주노동자 가족과 귀향 이주노동자 대상으로 이들의 요구와 권리에 근거한 접근 및 프로그램 수행 - 권리옹호, 복지서비스, 가족지원 등 현재 소규모 공동체 기업 설립하고 있으며, 향후 의료/보건, 건설, 컴퓨터 대여 등 사업계획.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프로젝트와 서비스는 회원가입에 기초하여 제공된다.

다. Kanlungan: 최근 이사회에서 귀향 프로그램 실시에 대한 의지표명으로 새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주노동자 가족/ 귀향자를 위한 귀향 프로그램이 세 영역에서 진행중 - 심리적: 상호지원그룹-법적,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 - 기업지원/생계 프로그램 개발 - 구호, 대안, 권리옹호 - 동원조직, 정책변화

라. Unlad Kabayan: 1994년 홍콩의 AMC의 지원아래 설립되어 교육과 훈련 세미나를 통한 이주노동자와 가족의 저축장려하고 있으며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기업경영 훈련: 어떻게 소규모 기업을 창업하고 경영할 것인가에 관한 훈련.

- 대출에 관한 지원: 운라드는 지역협동체와 은행 등과 협조하여 이주노동자들의 기업을 위한 대출이 용이하도록 지원한다. 지역 은행 역시 자신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금운용에 대한 자문을 해준다.

- 공동체 기업 지속: 운라드는 이주노동자나 가족들의 농업생산에 대한 자금지원을 해준다.

- 사업경영과 저축의 가치에 대한 훈련: 자신의 자본을 건설하기 위해 기업이 신뢰를 쌓도록 훈련한다.

## 3. 회의 종합정리와 도전들 그리고 계획

3-1. 다음은 회의 마지막 날 참가자들이 지난 4일간의 토론을 정리요약한 것으로 편의상 따로 설명을 달지 않는다.

1) 이슈와 관심: 가난, 실업, 이주의 사회적 비용

2) 요구와 필요조건: 경제적 지속성을 위한 정책(예, 외국투자에 대한 규제), 권리보호,

유엔이주민조약 비준, 대안적 지속가능한 생활스타일, 로비를 위한 채널, 심리적-사회적 지원, 이주노동자 조직화

3) 전망: 장기적 과정의 변화

정치적 안정, 안전하고 적당한 일과 임금, 지속적인 생계, 사회적 정의와 평등, 삶의 질, 교육, 사회적 안전, 주택과 건강에 대한 서비스

4) 귀환프로그램을 위한 구체적인 요구/필요:

- 가. 귀환에 관한 캠페인/교육
- 나. 파트너쉽: 저축자-매개자-투자자/기업가
- 다. 정보에의 접근/교환/나눔
- 라. 기술훈련: 지역별, 국내적, 아시아역내별,
- 마. 법적/행정적(예, 귀환, 세금문제 등)

5) 기업개발

- 가. 재정지원에 대한 접근(저금리 융자)
- 나. 사업상담서비스(실행가능성 연구 등)
- 다. 기술적 지원에의 접근(예, 기술훈련, 적절한 기술)
- 라. 물질적 토대 마련

3-2. 국내에서 귀향프로그램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최근 2-3년간의 일이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자신들의 절실한 요구와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 지원단체들의 당위에 의해 논의되어온 것이 사실이라면 이제는 필요를 명확히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조직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회의동안 여성이주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수입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이주노동의 과정과 이에 숨어있는 착취적 요소를 발견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자신들의 권리를 어떻게 요구할 수 있게 되었는가를 듣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기회였다. 이론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와 요구에서부터 자연스럽게 권리의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야말로 이주노동자들의 의식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